

July 2013

# FTA 무역 리포트

## 01. FTA 포커스

I. 2013년도 관세청 FTA 정책운영 방향

## 02. FTA 최근 동향

I. 관세청 주요 이슈

II. 우리나라 FTA 동향

III. 해외 FTA 동향

특집 : 한·터키 FTA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 03. 우리나라 체결 FTA국가의 교역 동향

I.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간 교역 현황

II. FTA 체결국(ASEAN·인도)에서의 발효 전후 3국(한·중·일) 교역 변화

III. 아시아권 국가와의 FTA 이행과 시사점

##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 농림수산물

I. 농림수산물 교역동향 및 주요품목

II. 농림수산물 FTA 특혜 교역 및 특징

III. 시사점 및 활용방안

## 05. FTA 교역 지도

### 부록



# Contents

FTA 무역 리포트 || 2013.07 No.1

<b>01. FTA 포커스</b> .....	<b>05</b>
I. 2013년도 관세청 FTA 정책운영 방향 .....	06
<b>02. FTA 최근 동향</b> .....	<b>11</b>
I. 관세청 주요 이슈 .....	12
II. 우리나라 FTA 동향 .....	13
III. 해외 FTA 동향 .....	14
특집 : 한·터키 FTA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	15
<b>03. 우리나라 체결 FTA국가의 교역 동향</b> .....	<b>23</b>
I.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간 교역 현황 .....	24
II. FTA 체결국(ASEAN·인도)에서의 발효 전후 한·중·일 교역 변화 .....	32
III. 아시아권 국가와의 FTA 이행과 시사점 .....	34
<b>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 농림수산물</b> .....	<b>37</b>
I. 농림수산물 교역동향 및 주요품목 .....	38
II. 농림수산물 FTA 특혜 교역 및 특징 .....	41
III. 시사점 및 활용방안 .....	49
<b>05. FTA 교역 지도</b> .....	<b>51</b>
<b>부록</b> .....	<b>67</b>

## 『FTA 무역리포트』 발간사



관세청장 **백운찬**

우리는 지금 FTA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전체 무역액의 35%가 FTA 체결국과의 무역이었고 기 체결된 콜롬비아와 협상중인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절반 이상의 무역이 FTA 경제권에 속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경제는 FTA무역을 발판삼아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였고 세계 8강의 무역대국에 진입하였으며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FTA 혜택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 등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체계적인 FTA 활용 역량이야말로 기업의 중장기 생존능력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로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양하고 복잡해 우리수출기업들은 FTA 활용과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기업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FTA 이행 및 교역 현황 등 관련 무역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FTA 무역 리포트』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FTA 무역 동향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교역지도 형태로 보여주고 활용전략을 협정별·산업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기업들의 FTA 활용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FTA 무역 리포트』는 우리기업들이 FTA 관련 정보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하는 한편 E-BOOK 형태로도 배부하는 등 정보 제공 확대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를 통해 우리 기업이 FTA를 제대로 활용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확장된 경제영토를 활기차게 누비고 계속 성장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7월  
관세청장 **백운찬**



# 01

FTA 포커스



CHINA

KOREA

JAPAN

AUSTRALIA

## 01. FTA 포커스



### I. 2013년도 관세청 FTA 정책운영 방향



관세청 FTA집행기획관 박병진

#### 1) 머리말

2013년 5월말 기준 WTO에 보고되어 발효중에 있는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은 370건<sup>1)</sup>이나 되는 등 21세기 국제무역환경은 국가간·지역간 지역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조류에 발맞추어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와 순차적으로 FTA를 체결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량 중 FTA 체결국가와의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35%에 달한다.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 교역국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머지않아 우리나라 수출입의 대부분이 FTA 특혜교역에 포함되는 시대가 다가올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세계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1년에 이어 2년 연속 무역 1조불을 달성하였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이룬데는, 여러 가지 요인

들이 있겠지만 FTA가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對세계 수출이 1.3%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아세안과 미국은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8.1%와 5.8%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FTA가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미 FTA는 발효 1년 4개월('13년 5월말 기준)만에 수출활용률이 70%를 상회하는 등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관세청의 대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1:1 컨설팅 실시 등의 지원정책이 한·미 FTA 발효 즉시 우리 기업이 FTA 특혜를 향유하는데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은 미흡하여 FTA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원산지 사후검증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일부 FTA의 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1) WTO 자료

## "상대국의 사후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비하여 FTA 사후검증 상담 전담반 설치운영"

또한, 수입측면에서는 FTA 무역을 가장한 불법부정 무역거래로 인한 국내 취약 산업에 피해 발생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원산지 제도의 이해부족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FTA 이행 등도 FTA의 긍정적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2) 2013년도 FTA 집행행정 추진방향

이에 관세청은 2013년에는 발효 중에 있는 FTA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들의 원산지 관리역량 제고에 집중함과 동시에, 철저하고 효율적인 FTA 이행체제를 확립함으로써 FTA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FTA 정책의 추진방향은 크게 첫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원스톱 지원 실시' 둘째, 'FTA 악용 차단을 통한 공정무역 질서 확립' 셋째, 'FTA 국제협력 강화'이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원스톱 지원 실시(Small Giants 500 프로젝트)

중소기업이 FTA 활용 극대화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의 지원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Small Giants 500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이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FTA 활용이 미흡한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FTA 원스톱지원센터'의 FTA 기업상담관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취약분야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 FTA 활용 Total 컨설팅 지원

먼저, 원산지관리 자체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FTA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구축·활용, 인증 지원 뿐 아니라 검증을 대비하여 사전 진단서비스 등을 포함한 'FTA 활용 Total 컨설팅'을 지원한다.

#### FTA 전문인력 양성 추진

또한,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중소기업에서 FTA를 담당할 실무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이나 마이스터고 등에 FTA 실무강좌 또는 전공학과를 개설을 통해 체계적인 FTA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실제 원산지 관리 전문인력이 기업 현장에서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Job Matching Day' 개최 등을 통해 원활한 구인-구직 매칭도 지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 FTA 사후검증 상담 전담반 설치·운영

급증하고 있는 상대국의 사후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비하여 검증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는 실제 검증사례를 중심으로 인증수출자, 중소기업, 검증 고위험 산업군 등에 대해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협정내용, 무역계약시 유의사항, 원산지 증빙자료의 보관방법 등에 대한 맞춤형 설명회로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한, 전국 및 각 지역단위별로 FTA 사후검증 상담 전담반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기업의 검증 상시 지원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소기업이 스스로 검증대응 현황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자율점검표를 적극 개발·보급하는 등 다각적인 검증대비 지원에 힘쓰고 있다.

#### FTA 활용애로 해외현장 해결팀 운영 및 FTA-Hub 구축

해외 통관애로로 인해 FTA 활용에 애로를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상대국과 협의를 통해 적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FTA 활용애로 해외현장 해결팀'을 운영하여 차별화되고 신속한 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간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FTA-Hub"라는 국가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FTA-PASS와 기업 ERP간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연계모듈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구조적인 FTA 활용비용 절감을 통한 FTA 활용확산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 나. FTA 악용차단을 통한 공정무역질서 확립

##### 검증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및 3국간 무역거래에 대한 입체적 모니터링 실시

FTA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FTA 체결국간 무역창출 등 후생증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3국에

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 세탁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FTA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검증을 위한 '표준질의서'를 마련하여 검증에 활용하고, 원산지 위험지표를 활용한 '층화추출법'<sup>2)</sup> 방식과 '단순 무작위' 방식을 병행하여 검증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검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FTA를 악용한 제3국산 농수산물의 불법 우회 수입 방지를 위하여 필수 원산지 검증 대상품목(203개 품목)을 농수산물 소품목으로 확대하고, 위험도가 높은 농수산물 해외공급자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원산지 고위험 수입업체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체약국-비당사국 등 3국간 무역거래 총량에 대한 입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원산지 세탁 위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등 환적 화물의 불법 우회수출입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 다. FTA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가간 협력

##### FTA 체결국간 협력체계 강화 및 상대국 관세당국과 MOU체결 추진

관세청은 FTA 이행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등 기업 친화적인 원산지제도 도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제 원산지 컨퍼런스, 원산지 실무협력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FTA 체결국간의 이행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원산지제도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2) 층화추출법(Stratified Sampling Method)은 조사대상이 되는 모집단을 몇 개의 집단(층)으로 구분하여 미리 할당된 수에 따라 각 층에서 표본 추출하는 것임.

또한 원산지 검증절차의 조화를 통한 기업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상대국 관세당국과의 '원산지 검증' MOU 체결을 추진하고, 신규 협상에서는 기업경영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원산지검증 결과'의 단기간 회신<sup>3)</sup>이 합리적으로 합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아울러, FTA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산지검증 사례, 민원질의 회신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준수해야 할 협정상 의무이행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세관당국간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3) 맺음말

2013년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각국의 FTA 체결을 통한 경제적 이익 선점의 노력이 지속될 것

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5월 1일 터키와 FTA가 발효되었고, 한·중, 한·중·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아세안회원국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는 자유화 확대를 목표로 양자간 FTA 협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FTA의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발효된 FTA의 활용을 촉진하고, 협상중에 있는 FTA의 성공적인 타결과 이행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관세청은 FTA 협상 및 이행체제를 개선하고 내실화함으로써 기업의 FTA 활용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원산지 검증 체제 구축을 통해 불법 FTA 무역을 차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FTA 허브국가로 한걸음 더 도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나갈 것이다.

### 「FTA 원스톱 지원센터」<sup>3)</sup>

#### | 본부세관별 「FTA 원스톱 지원센터」 담당자 |

세 관 명	담당자	전화번호	팩 스	E-mail
서울본부세관	김호경	02-510-1570	02-2015-7871	fta-seoul@customs.go.kr
인천본부세관	홍성우	032-452-3172	032-891-9186	fta020@customs.go.kr
부산본부세관	이석동	051-620-6637	051-620-1140	fta030@customs.go.kr
대구본부세관	김영호	053-230-5252	053-230-5626	fta120@customs.go.kr
광주본부세관	김수미	062-975-8053	062-975-8049	fta071@customs.go.kr
평택직할세관	최종남	031-8054-7043	031-8054-7046	fta016@customs.go.kr

3) 전국 6개 본부세관에 설치된 FTA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FTA 활용 애로사항 상담에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사후관리까지 기업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음.



# 02

FTA 최근 동향



CHINA

KOREA

JAPAN

AUSTRALIA

## 02. FTA 최근 동향



### 1. 관세청 주요 이슈



#### 1) 관세청 16개 전국 시·도와 FTA 활용지원 협력(2013.05.22)

관세청에서는 5월 22일 서울세관에서 산업부 등 중앙부처와 16개 광역 지자체, 경제단체·산업별 협회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2013년 제1차 FTA기업지원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의회는 'FTA 활용지원 네트워크'구축을 통하여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이날 협의회에서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관세청의 『FTA 중소기업 지원 대책(SG 500 Project)』<sup>4)</sup>을 소개하였다. 또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유관기관간의 협력을 통하여 기업의 FTA 활용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해당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강조하였다.

#### 2) 관세청·포스코 FTA 활용 업무협력 MOU 체결(2013.05.24)

관세청과 국내 대표적인 소재공급 기업인 포스코는 5월 24일 한국철강협회에서 중소기업 FTA활용 지원에 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본 계약식은 관세청(FTA집행 주무부처)과 포스코에서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MOU의 주요내용은 포스코가 재료를 공급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 정보 유통지원, FTA 원산지 검증대응 지원, FTA활용 매뉴얼 제작·배포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FTA 동반성장 프로그램'등이다.

#### 3) 수출기업 대상 원산지 검증 사례 설명회 개최(2013.05.29~2013.06.24)

관세청은 2013년 5월 29일부터 6월 24일까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sup>5)</sup> 사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FTA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증빙자료의 보관 방법, 사후검증절차 및 대응요령이다. 또한 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주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 4) FTA 사후검증 상담지원센터 설치 운영 (2013.06~)

관세청은 기업의 검증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전국단위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FTA 사후검증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FTA 상담 전담코너』를 신설한다. 본부세관 FTA 원스톱 지원센터에 "FTA 사후검증 요령 자문팀"을 설치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자문을 실시한다. 아울러 본부 세관에는 기업들에게 상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전담 관세사를 지정·운영하여 기업의 FTA 사후검증 대응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4) FTA Small Giant 500 Project : FTA 활용이 미흡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지원하여 FTA 활용을 통해 수출이 연 100% 이상 증가하는 강소기업을 500개 이상 육성 지원하는 프로젝트임

5) FTA 용어집 11번 참조

## II. 우리나라 FTA 동향

### 1) 한·중·일 FTA 협상 개시, 동북아 통합 추진 : 1차 협상 완료(2013.03.26~28)

우리나라는 2012년 11월 한·중·일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3월에는 1차 협상이 종료되는 등 미국, EU 등 주요 선진 경제권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FTA도 적극 추진 중이다.

한·중·일 FTA가 타결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초대형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sup>6)</sup>. 본 협상의 경제적 효과는 10년간 최대 163억달러, 약 18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 2) 한·터키 FTA 발효(2013.05.01)

2008년 6월 공동연구가 개시된 한·터키 FTA는 양국간 국내절차가 완료된 이후 2013년 5월 1일 발효되었다. 해당 FTA는 우리나라가 9번째 체결한 FTA이자 터키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다.

이로써, 국내 수출입 기업은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에 앞서 터키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 3) 한·EU FTA 추가 관세인하(2013. 07. 01~)

한·EU FTA가 7월 1일 발효 3년차가 시작됨에 따라 양측 관세 미철페 품목의 추가 관세인하가 이루어진다. EU산 승용차, 삼겹살, 위스키 등 2,000여개(HSK 기준) 품목의 관세율이 인하된다.

예를 들어, 중대형 승용차는 기존 관세가 3.2%였으나, 1.6%, 삼겹살은 20.4%에서 18.1%, 핸드백은 4%에서 2%, 위스키는 10%에서 5%로 인하된다. EU 또한, 승용차 등 우리나라 수출물품 55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다.

### 4) 크로아티아 EU 가입으로 對크로아티아 수출물품 한·EU 특혜관세 혜택 가능

2013년 7월 1일자로 크로아티아가 EU(EU의 28번째 회원국)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크로아티아 수출물품의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의 한·EU FTA에 따라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수출자는 해당 인증을 사용하여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크로아티아에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는 수출자는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이 필요하다.<sup>7)</sup>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7)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세청 FTA 고객센터(1577-8577)에 문의가능

### III. 해외 FTA 협상 동향

#### 1) 日·EU, 경제동반자협정(EPA)<sup>8)</sup> 협상 시작

2013년 3월 25일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무역자유화 등에 관한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개시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2013년 4월 15일에서 19일까지 브뤼셀에서 무역 분야 제1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일본은 최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sup>9)</sup>에 참가의사를 밝히는 등 무역확대를 통한 경제회복을 모색 중에 있다.

#### 2) EU·미국 FTA 협상개시 합의

2013년 2월 13일 EU와 미국은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그동안 미국은 EU와의 FTA 체결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오바마 재선 이후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EU의회 대표 등이 언론을 통

해 지속해서 EU·미국과의 FTA 추진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고 이러한 EU측의 노력이 협상개시를 이끌어 내었다.

#### 3) 미국 TPP 협상 가속화

2013년 미국의 가장 중요한 통상현안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타결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 주도의 FTA 체결이 가속화되는 것을 견제하고 아태 지역에서 경제, 정치, 문화에 걸쳐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코자 중국을 배제한 채 주도적으로 TPP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도 본 협정에 대해 2013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른 협상국<sup>10)</sup>도 올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전에 타결을 희망하고 있다.

8)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경제 동반자 협정) - FTA 용어집 17번 참조

9) TPP(Trans-Pacific Partnership or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 FTA 용어집 16번 참조

10) 2013년 현재 총 12개국

## 특 집 : 한·터키 FTA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한·터키 FTA가 2013년 5월 1일 발효되었다. 터키는 유럽·아시아·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며, 중동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써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다가올 것이다. 특히 한·터키 FTA로 인해 한 국산 제품에 부과되던 섬유·의류 보호관세 철폐는 국내 수출기업에 호조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 1. 터키 경제개관

#### 터키 정부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

터키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었던 2009년 경 제성장률 -4.7%를 기록한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 되어 2010~2011년에는 각각 8.5%와 10.4%의 높 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의 여파로 다시 3%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 였다. 터키의 1인당 GDP는 2010년 처음으로 1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어 구매 력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이다.

터키 정부는 경제성장 추구하고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 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경제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경제안정의 측면에서는 물가상승률 억제정책 및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 표 2-1 | 터키 경제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경제성장률(%)	2.6	-	-
GDP(10억 달러)	799	888	952
1인당 GDP(달러)	10,673	11,716	12,412
실질 GDP성장률(%)	3.2	5.0	5.0
실업률(%)	9.0	10.2	9.9
수출액(10억 달러)	149.5	165.7	185.1
수입액(10억 달러)	239.5	272.5	295.9

자료 : 터키 경제부

- NEXT-11(골드만삭스) : 터키, 한국,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 MIKT(골드만삭스) : 터키,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 VISTA(일본 브릭스 경제연구소) : 터키,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공, 아르헨티나

또한, 터키는 7천만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재정위기에 불구하고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Post-BRICs 국가군(NEXT-11, MIKT, VISTA 등\*)으로 선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경제성장 이 예상된다.

## II. 한·터키 FTA 개요

### 한·터키 FTA는 터키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

한·터키 FTA 협정은 2010년 4월 앙카라에서 첫 공식 협상을 벌인 이래 2012년 3월 26일 공식적으로 타결되었다.

협정 중 서비스·투자 협정 및 그 밖의 협정은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내 타결될 것이다. 그리

고 한·터키 FTA는 2013년 5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시장잠재력, 전략적 중요성, 우리나라와의 교역구조를 고려할 때, 협정 체결로 인한 기대가치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터키는 유럽인구 2위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의 재정위기에 불구하고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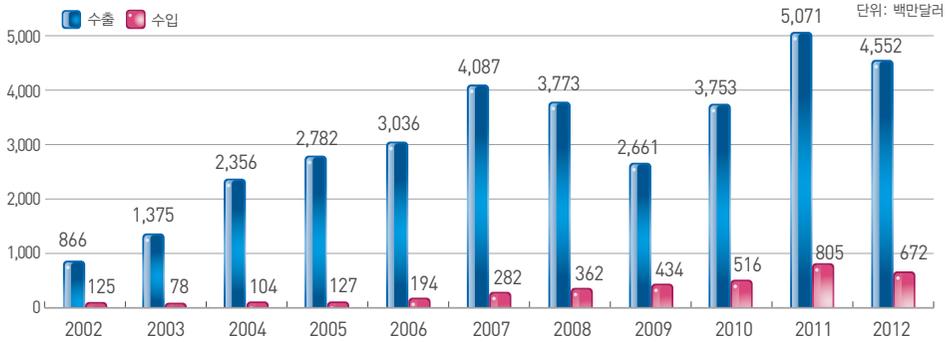
지정학적으로 터키는 유럽,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요충지로서, 중동시장 관문,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역할도 기대된다. 터키는 EU와 관세 동맹을 체결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FTA를 추진해왔는데, EU를 제외하면 발칸반도·동유럽·북아프리카 등의 소규모 국가가 대부분이다.

| 표 2-2 | 주요 협상 경과

구분	협상결과
2008.6	한·터키 FTA 공동연구 개시
2010.4	한·터키 FTA 1차협상
2012.8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정식 서명
2013.5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발효

자료 : 외교통상부

| 그림 2-1 | 한국의 대터키 교역현황(2002~2012)



우리나라와의 교역구조에 있어서도, 양국이 1957년 수교 이후 對터키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한·터키 FTA는 터키가 아시아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써,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는 경쟁국인 일본, 중국에 앞서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한·터키 FTA는 한·ASEAN FTA 방식과 같이 기본협정을 토대로 상품무역협정, 서비스·투자협정 및 그 밖의 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는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만 체결되었으며 계속해서 서비스·투자협정<sup>11)</sup> 및 그 밖의 협정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 III. 한·터키 FTA 협정 주요 내용

상품양허 우리측 99.6%, 터키측 100%를 10년내 관세철폐 예정

한·터키 FTA에서는 상품양허와 관련하여 양측 모두 수입액 기준 거의 전품목(약 100%)을 10년내 관세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측은 99.6%, 터키측은 100%를 10년내 관세철폐가 진행될 예정이다. 품목 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92.2%, 터키는 89.8%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10년내 철폐되는 것이다.



11) 서비스·투자협정의 경우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타결하기로 합의함.

특집 : 한·터키 FTA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상품 특성별로 구분해 보면 공산품은 양측 모두 전 품목에 대해 7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농수산물의 경우 양허품목의 비중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52.5%, 터키가 52.7%이다. 수입액 기준으로도 우리나라가 95.7%, 터키가 97.3%로 유사

하다. 그러나 단기철폐(5년 이내 철폐) 비중은 수입액 기준으로 터키가 70.4%로 우리나라의 48.0%보다 높다. 특히, 40.7%에 해당하는 우리 측 민감 농수산물의 양허제외는 국내 1차산업 보호가 협상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2-3 | 한·터키 FTA 공산품 양허유형별 주요 품목

단위 : %

양허유형	한국 주요 품목			터키 주요 품목		
	품목	품목수	비중	품목	품목수	비중
즉시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기조절기, 금속절삭기 공기계</li> <li>•냉장고, 모자, 아연광, 양탄자</li> <li>•의료용기기, 광물성연료 (나프타, 원유, 기타석유제품)</li> </ul>	9,365	9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BS합성수지, 기타플라스틱제품</li> <li>•일부평판압연제품, 기타알루미늄제품</li> <li>•신변장식용품, 포트랜드시멘트, 합판, 섬유판</li> <li>•파티클보드, 조립식목재건축물, 철도차량부품</li> </ul>	7,389	77.8
3년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시경, 농약, 밸브, 베어링, 변압기부품</li> <li>•펌프, 계측기, 대리석</li> </ul>	20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용 고무타이어</li> <li>•공기조절기, 원동기와 펌프</li> <li>•볼트와 너트, 기타산업기계, 가열난방기</li> </ul>	350	3.7
5년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립식목재건축물, 제재목, 전동축</li> <li>•알루미늄의 판·시트, 화강암, 가솔린 경차, 가솔린/디젤 소형</li> </ul>	233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자동차부품, 면사</li> <li>•편직물, 일부 합성필라멘트사</li> <li>•합성필라멘트사 직물, 냉장고</li> <li>•전동기, 가솔린/디젤 중·대형</li> </ul>	913	9.6
*7년 비선형 철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솔린/디젤 1,600cc이하 소형승용차(4개 세션)</li> </ul>	4	0.0
7년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모사, 섬유모사, 직물합판</li> <li>•섬유판, 파티클보드(PB)</li> </ul>	129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모 및 섬유모 혼방직물</li> <li>•기어박스, 평판</li> <li>•압연제품, 칼라 TV, 세탁기</li> </ul>	835	8.8
총계		9,927	100		9,491	100

자료 : KIEP, 『한·터키 FTA의 영향분석』, 2012년 6월, p.58. 재인용

주 : 7년 비선형은 발효초기에 관세 삭감폭을 크게하는 방식/ 비중: 전체 품목수 대비 양허유형별 품목수

| 표 2-4 | 한·터키 FTA 농수산물 양허제의 주요 품목

구분	해당품목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	•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
현행관세 유지	• 쇠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사과, 배, 고등어류, 오징어 (냉동/건조) 등

양허품목의 경우에도 관세부분감축<sup>12)</sup>, 장기관세철폐<sup>13)</sup>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감 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확보하는 한편, 농수산물 **對터키 최대 수출품 및 수출 유망 품목<sup>14)</sup>**에 대해서는 관세 즉시철폐를 확보하였다.

### 한·터키 FTA 원산지 규정 한·EU FTA와 유사하되 일부품목 완화

한·터키 FTA 원산지 규정의 특징은 EU와의 관세동맹 관계를 고려하여 한·EU FTA상의 특혜 원산지 규정에 기본적으로 합의하되, 양측의 교역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품목에 대해 원산지기준을 완화한 것이다.<sup>15)</sup>

전기·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주요 공산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sup>16)</sup>과 부가가치기준<sup>17)</sup>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설탕과자(HS

1704), 초콜릿 함유 식료품(HS 1806) 및 기타 비스킷(HS 1905.90)에 대해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한·EU FTA보다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면사(HS 5205), 재생필라멘트 직물(HS 5408),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사(HS 5510)는 각각 연간 200톤의 원산지 예외쿼터를 설정하여 교역을 촉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절차에 있어서도 한·EU FTA와 유사하게 수출자 자율증명방식<sup>18)</sup>이며 발급방식 또한 특별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인보이스 신고(Invoice Declaration)방식을 채택하였다. 참고로, 원산지 신고서 문안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표 2-5 참조)

다만, 한·터키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를 인증수출자로 한정하지 않은 점이 한·EU FTA와 상이하다.

12) 우리나라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예외적 사항으로 관세인하 수준을 10~30%로 조정, 인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 유지

13) 우리나라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예외적 사항으로 장기철폐 품목은 10년간 장기에 걸쳐 관세를 인하함.

14) 인스턴트 커피, 담배, 라면, 기타 조제식료품, 소주, 김치, 간장, 된장, 맥주, 유아용 조제식료품, 한천, 황다량어 등

15) 외교통상부(2012), 한·터키 FTA 상세설명자료

16) FTA 용어집 6번 참조

17) FTA 용어집 7번 참조

18)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

| 표 2-5 | 한·터키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작성방법

원산지 신고서 문안
<p>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① preferential origin.                      .....② (Place and date)                      .....③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p>
작성방법
<p>①란 : '제품의 원산지를 작성 (예 : KR, KOREA, TR, TURKEY)                      ②란 : '원산지신고서 작성장소와 작성일자'를 작성                      ※ 해당 서류에 장소와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작성생략 가능 (해당서류에 장소와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경우에는 작성해야 함)                      ③란 : '수출자의 서명과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p>

**한·터키 FTA 섬유·의류 보호관세 철폐로  
국내 수출기업에 호조**

우리나라와 터키의 섬유산업 교역구조는 한국이 원사, 직물 등 섬유소재를 주로 수출하고, 터키는 이를 가공한 후 EU, 중동 등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보완적 가공무역 형태를 띠고 있다.

터키는 우리나라의 10위권 섬유 수출국으로써, 섬유수출부분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한다(2012년 기준).

2012년 對터키 섬유류 수출은 231백만달러, 수입은 63백만달러에 이른다.

또한, 터키는 전통적으로 섬유 및 의류 관련 산업이 발달하여 EU 시장내에서 제4위 섬유 수출국이다(2012년 기준). 그러나 중국산 등 저가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져 섬유산업에 대한 보호무역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sup>19)</sup> 특히, 터키측에서는 2011년 9월부터 섬유·의류부문에 대한 추가 수입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다. EU 국가에는 동조치 대상이 EU와의 관세 동맹

| 표 2-6 | 한·터키 섬유 교역현황

단위 : 천달러

구분	수출	수입
2010	271,787	51,425
2011	297,601	56,189
2012	230,639	56,189

19) 한국수출입은행(2013), 한·터키 FTA 발효 이후 대터키 산업협력 증진방안

| 표 2-7 | 섬유·의류 산업보호관세 적용품목

단위 : US\$/kg, %

구분	HS 코드 및 품명	최소 (US\$/kg)	추가 관세 (%)	최대 (US\$/kg)	
부속서 1	양모직물·면직물· 인조·섬유직물	5111, 5112, 5208, 5209, 5509, 5210, 5211, 5407 5408, 5512, 5513, 5514, 5515, 5516	1.25	20	4.25
	의류	6101-6110, 6112, 6201-6208, 6211	5.5	30	20
부속서 2	섬유·사·직물	5212	1.25	20	4.25
	부직포·양탄자· 특수 직물 등	5603, 5608, 5901.10-0000	-	12	4.25
	편물	6001-6006	-	20	4.25
	섬유·사·직물	5309.21, 5309.29	-	12	4.25
	부직포·양탄자· 특수직물 등	5801, 5802	-	20	4.25
		5903	-	14	4.25
		6209, 6212	5.5	30	20
		6215	-	30	20
기타섬유제품	6302	1.25	20	4.25	

자료 : 터키 관보(2011.09)

에 따라 해당하지 않으나,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에는 추가 수입 관세<sup>20)</sup>(12~30%)가 부과되었다.<sup>21)</sup>

한·터키 FTA 협정발효로 섬유·의류에 부과되었던 터키측 산업보호관세는 철폐되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섬유·직물업계의 對터키 수출시 애로 사항이 다소 해결되고 중국, 인도 제품과의 경쟁에서 유리하게 되었다.

#### IV. 맺음말

한국과 터키의 교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시작되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2012년 기준으로 터키는 한국의 11위의 무역 흑자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터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경제 부흥 정책이 맞물리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 본 관세는 통관가격에 과세됨

21) 한국화섬협회(2013), 한·터키 FTA 타결현황 및 주요이슈

| 표 2-8 | 관세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

주요 수출품목 (HS Code)	현행 관세율 (터키)	양허시기
석유 제품 (27)	3.5~4.5	즉시
석유 화학 제품 (29)	0~6.5	즉시
플라스틱 (39)	0~6.5	즉시
합성 고무 (40)	0~2.9	즉시
섬유 (60)	8	5년
철강 (72)	0~15	즉시~7년
기계 제품 (84)	1.7	즉시
전기·전자 제품 (85)	0~14	즉시~7년
승용차 (87)	3~10	즉시~7년
화물차 (87)	0~22	즉시~7년

자료 : 외교부 및 WTO

한·터키 FTA는 관세인하로 인한 수출 증가로 5년간 6.3억달러 이상의 교역증대 및 4.4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예상된다.<sup>22)</sup> 관세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플라스틱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호조가 될 것이다.

현재 양국간의 교역규모는 절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나 한·터키 FTA 체결로 인해, 양국간 교역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인하 효과 이외에도 수출입여건 및 투자환경의 개선으로 인해 양국간 산업협력 증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터키는 거대한 내수시장, 지리적 요충지이며, 터키가 체결한 FTA 중 아세안 국가와의 최초 FTA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협정을 잘 활용한다면, 한·터키 FTA는 국내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을 가져다주고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2) 2010년 교역액 및 실행관세율 기준, 외교부(2012), 한·터키 FTA 협상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

# 03

## 우리나라 체결 FTA국가의 교역 동향



CHINA

KOREA

JAPAN

AUSTRALIA

### 03. 우리나라 체결 FTA국가의 교역 동향



- 분석 배경 : ASEAN은 1980~1990년대 연간 7~8%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동아시아의 신흥 경제권이며, 현재는 내수 잠재력이 크고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인도 역시 12억 인구의 거대 시장을 자랑하며, 한·인도 CEPA 양허안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관세감축 효과가 크게 나타나, 양국간 교역 증가 또한 기대된다.<sup>23)</sup> 이에 이번호에서는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 중 아세안과 인도를 통해 FTA 체결 전후 산업의 변화, 협정 발효 전후 한국·중국·일본 교역에서의 변화를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아시아 권 국가와의 FTA 이행현황과 이를 통해 나타나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 분석 범위 : 아시아 경제권과의 FTA(ASEAN, 인도)

#### 1.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간 교역 현황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 약 3배 증가  
(2008년→2013년 1분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 24.7% 증가, 2012년 한·미 FTA의 발효로 34.8%에 이르렀다.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이행은 국가간의 무역장벽을 낮추는 등 FTA 교역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1) FTA 무역비중 증가

우리나라의 무역 가운데 FTA 체결국과 발생하는 무역규모는 2012년 말 기준 34.8%에 이른다. FTA 교역

| 표 3-1 | FTA 발효국과의 교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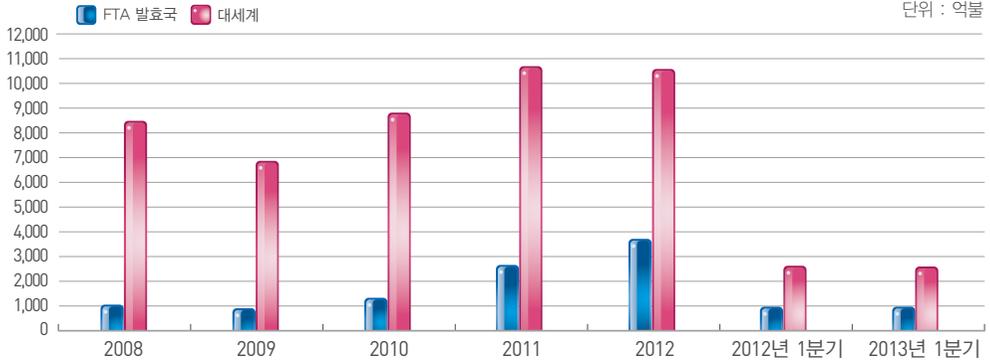
단위 : 억불,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년 1분기	2013년 1분기
FTA 발효국	수출	548	452	711	1,457	2,044	512	519
	수입	492	417	597	1,204	1,666	426	414
	교역액	1,040	869	1,308	2,662	3,710	938	933
전체	수출	4,220	3,635	4,664	5,552	5,479	1,348	1,355
	수입	4,353	3,231	4,252	5,244	5,196	1,337	1,297
	교역액	8,573	6,866	8,916	10,796	10,675	2,685	2,651
비중		12.1	12.7	14.7	24.7	34.8	34.9	35.2

주 : 연도별 실제 발효국가 기준

23) 한·인도 CEPA 양허안에 따라 5~8년에 걸쳐 균등하게 관세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음

| 그림 3-1 | FTA 발효국과의 교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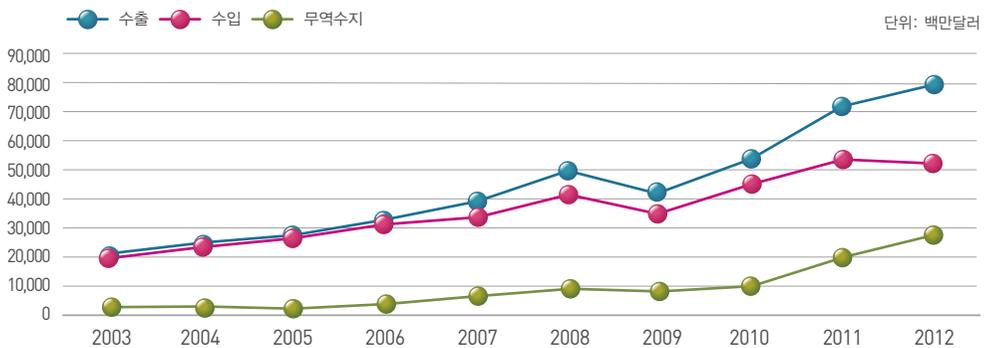
## 2) 한·ASEAN FTA 교역현황

한·ASEAN FTA 발효 이후 무역량 증가 추세 지속  
(무역수지 15.4% 증가: 2007년→2012년)

ASEAN과의 FTA는 2007년 FTA 발효 이후 6년

(’07~’12년)동안 수출이 약 2.0배, 수입은 1.6배 증가 하였으며, 무역수지는 4.8배 증가하였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연평균 15.4%,<sup>24)</sup> 수입 역시 연평균 9.4% 증가<sup>25)</sup>추이를 보이고 있다.

| 그림 3-2 | 한·ASEAN FTA의 수출입 현황(2003~2012)



### 한·ASEAN FTA 전후 수출입 품목의 변화

\* 수출증가율이 높은 품목 : 광산물(29.4%) > 농림수산물(25.8%)

\* 수입증가율이 높은 품목 : 섬유류(32.1%) > 기계류(23.5%)

24) 2007년:38,749백만달러 → 2012년: 79,145백만달러  
25) 2007년:33,109백만달러 → 2012년: 51,977백만달러

03. 우리나라 체결 FTA국가의 교역 동향

FTA 체결 이전 3년('04~'06년) 평균 한국의 對 ASEAN 수출이 활발했던 품목은 전자전기제품(MTI<sup>26)</sup> 1단위 기준으로, 對ASEAN 전체 수출의 약 40%를 점유하였다. FTA 체결 6년차인 2012년에는 평균 약 23.7%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의 절대량은 증가하여 6년('07~'12년)간 연평균 7.5%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기간 ASEAN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높은 수출 증가율을 시현한 품목은 광산물로 연평균 29.4%가 증가하였고, 이어 농림수산물이 연평균 25.8%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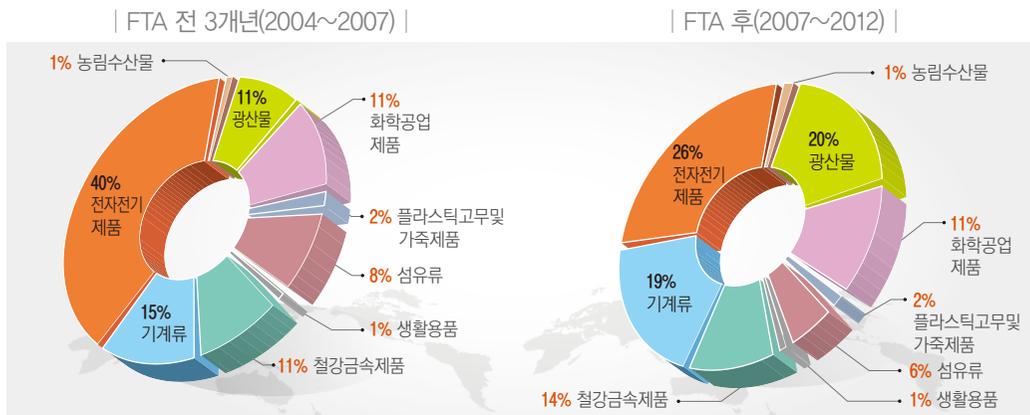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FTA 체결 이전 전자전기제품에만 집중되어 있던 수출구조가 FTA 체결이후 기계류, 철강금속제품, 광산물 등으로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추이가 특징적이다. 특히 기계류 가운데 건설중장비는

2009년 FTA로 인한 관세 철폐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노력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 FTA 체결 이전 3년('04~'06년) 평균 對 ASEAN 수입이 활발했던 산업은 광산물(MTI 1단위 기준)이다. 동기간 對ASEAN 전체 수입의 약 37%를 점유하였는데, 이러한 추세는 FTA 체결 이후에도 이어져 2012년에는 40%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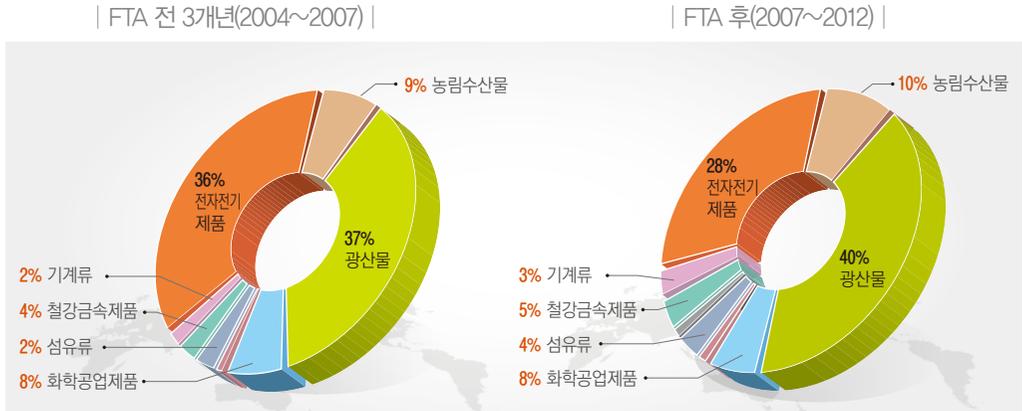
한편 한·ASEAN FTA 체결 이후 높은 수입 증가율을 시현한 품목은 섬유류로 연평균 32.1%가 증가하였고, 이어 기계류가 연평균 23.5%로 증가하였다. 특히 섬유류는 베트남 내에서 최고 외환가득산업으로 부상하는 등 급속도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對한국 수출도 연평균 45.9%('07~'12년)에 달하고 있었다.

| 그림 3-3 | 한·ASEAN FTA 전후 수출산업의 변화



26) FTA 용어집 13번 참조

| 그림 3-4 | 한·ASEAN FTA 전후 수입산업의 변화



對ASEAN 수입 구조는 FTA 체결 이전 광산물과 전자전자제품에 양분되어 집중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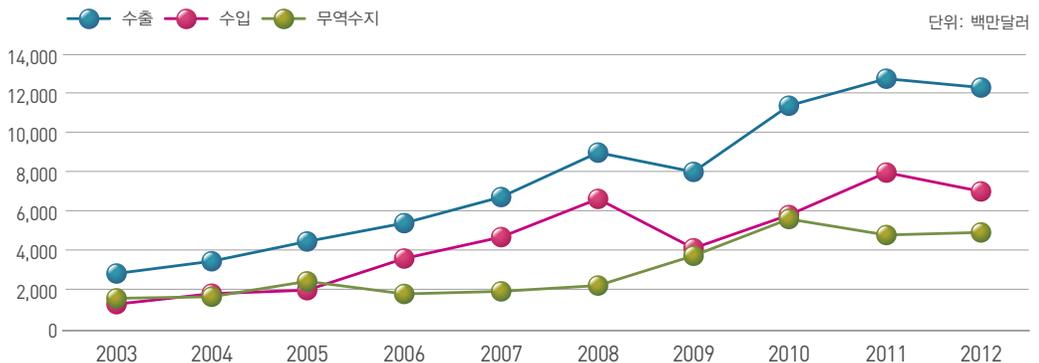
그러나 FTA 체결 이후 원재료 1차 산업인 광산물의 집중이 강화되고, 고차산업인 전자전자제품으로의 비중은 축소되는 추세로 변화되었다.

### 3) 한·인도 CEPA 교역현황

인도와의 교역은 지속적으로 확장 추세, 최근 5년간(2007~2012년) 수출 1.8배 증가

우리나라는 신흥 경제 그룹 BRICs 국가인 인도 시장으로의 진출과 시장선점을 위해 한·인도 CEPA를 체결하였다.

| 그림 3-5 | 對인도 수출입 현황(2003~2012)



03. 우리나라 체결 FTA국가의 교역 동향

한·인도 CEPA 전후 수출입 품목의 변화

\* 수출증가율이 높은 품목 : 광산물(23.4%) >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13.2%)<sup>27)</sup>

\* 수입증가율이 높은 품목 : 농림수산물(34.1%) > 화학공업제품(16.9%)<sup>28)</sup>

2010년 FTA 발효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 등 세계 경제의 위축으로 3년간('10~'12년) 수출은 정체, 수입은 1.2배 증가, 무역수지는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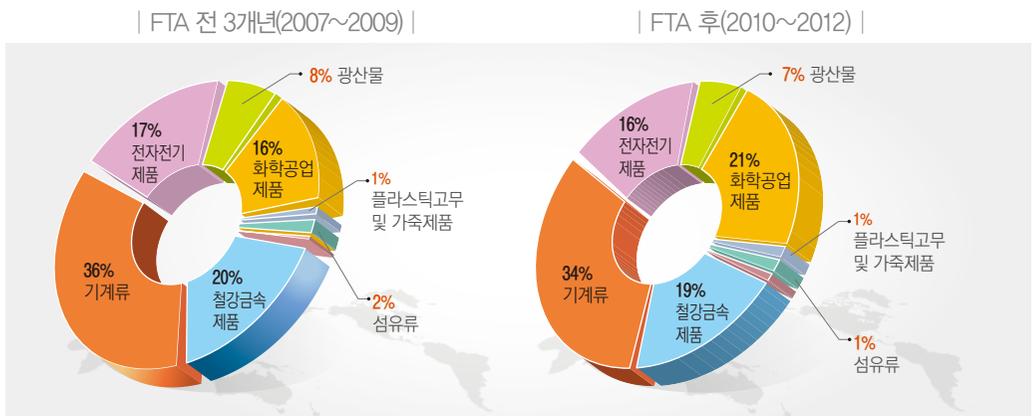
그러나 지난 10년간 인도와의 교역은 증가 추세로 분석되었다.

CEPA 체결 이전 3년('07~'09년) 평균 한국의 대인도 수출이 활발했던 산업은 기계류(MTI 1단위 기준)이다. 해당 품목은 인도 전체 수출 비중의 약 36%

를 점유하였고, FTA 체결 이후에도 34%의 비중을 유지하였다.

CEPA 체결 이후 3년간 인도 수출 증가율이 컸던 산업은 한·아세안 FTA와 유사하게 광산물로 연평균 23.4%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이어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이 연평균 13.2%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 품목의 점유율은 각각 7.6%, 1.5%에 불과하여, 전체 수출의 증가를 견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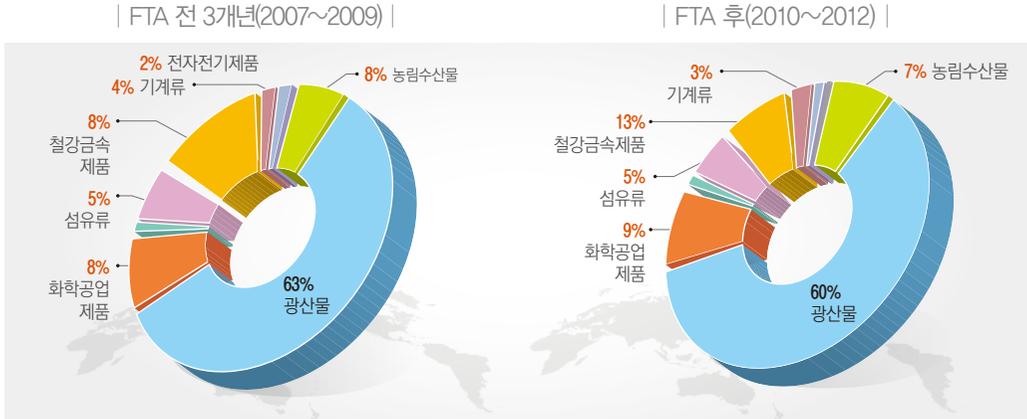
| 그림 3-6 | 한·인도 CEPA 전후 수출산업의 변화



27) FTA 체결 이후 수출 감소 산업:잡제품(10.5%), 전자전기제품(8.2%), 기계류(2.0%), 농림수산물(3.0%) 등

28) FTA 체결 이후 수입 감소 산업: 석유류(13.7%), 잡제품(8.5%)

| 그림 3-7 | 한·인도 CEPA 전후 수입산업의 변화



다음으로 CEPA 체결 이전 3년 평균 한국의 對인도 수입이 활발했던 산업 역시 광산물로 전체 수출의 약 63%를 점유하고 있었다. CEPA 체결 이후에는 약 60%로 소폭 감소하였다. 인도로부터 수입되는 광산물의 주요 품목은 나프타, 알루미늄 괴 등이다.

CEPA 체결 이후 3년간 對인도 수입의 증가폭이 컸던 산업은 농림수산물로 연평균 34.1%, 이어 화학공업제품이 연평균 16.9%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對인도 농림수산물의 수입은 CEPA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말 기준 여전히 전체 수입에서의 점유율은 5.8%에 불과하다.

요컨대 한·인도 간 수출입 구조는 CEPA 체결 이전 수출은 기계류, 수입은 광산물에 집중되었던 교역구조가 CEPA 체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양국 교역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이다.

#### 4) 아시아 경제권과의 교역특징과 FTA 활용

우리나라와의 수출입이 증가 추세, FTA 체결 이후에도 무역량 증가

ASEAN, 인도 등 아시아 경제권은 신흥 경제 성장 동력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와의 수출입이 증가 추세에 있는 지역이다. FTA 체결 이후에도 무역량이 증가하고 있다.

한·ASEAN과 FTA 이행에서 MTI 1단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산업에서 수출과 수입이 확장되고 있으며, 수출입의 비중은 산업간 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의 경우 기존에 주력 수출 품목이었던 전자전기제품의 비중이 감소하고, 광산물과 기계류 등이 증가하는 등 FTA 이후 수출품목의 편중이 완화되었다.

03. 우리나라 체결 FTA국가의 교역 동향

반면 수입은 광산물의 집중이 강화되고 있으며, 전자 전기제품의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

한편 ASEAN과의 교역은 수출입 양면에서 광산물 품목이 확대되고 있으나, FTA 특혜 수출은 윤활유, 기타석유 등 소수 품목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광산물의 FTA 특혜 수입은 활용비중이 90%이 상으로 도출된다. 우리나라가 ASEAN으로의 수출시 FTA 특혜세율이 적용가능한 광산물 품목의 총 수입

금액 중 96%이상이 LNG(액상천연가스)와 원유 2개 품목으로 광산물의 FTA 특혜수입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같은 ASEAN으로의 FTA 수출 저조에는 우리나라가 ASEAN으로 수출하는 물품 가운데 FTA 특혜 세율 적용이 가능한 수출의 비중이 35.7%<sup>29)</sup>에 불과하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산업별로는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이 10%<sup>30)</sup>이상이며 특혜대상 품목의 비중이 50%이상인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등의 FTA 활용 촉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표 3-2 | 한·ASEAN FTA의 특혜 수출입 대상 현황(2012)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수입		
	FTA 대상수출	전체수출 실적	비중	FTA 대상수입	전체수입 실적	비중
광 산 물	638.6	10,765	5.9	14,062	20,038	70.2
기 계 류	4,231.5	7,787	54.3	576	876	65.7
농림 수산물	554.9	934	59.4	2,882	5,470	52.7
생 활 용 품	229.8	407	56.4	711	862	82.5
섬 유 류	2,103.3	4,427	47.5	2,793	3,018	92.5
잡 제 품	117.6	170	69.0	81	88	92.4
전자전기제품	2,677.9	12,167	22.0	1,712	6,434	26.6
철강금속제품	4,393.4	9,780	44.9	904	1,989	45.4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665.4	1,216	54.7	432	454	95.1
화학공업제품	4,093.5	7,571	54.1	1,433	2,813	51.0
합계	19,706	55,225	35.7	25,586	42,041	60.9

주 : MTI 1단위 기준

29) 19,706(백만불)/55,225(백만불)\*100  
30) 7,787(백만불)/55,225(백만불)\*100

인도는 광산물과,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등 일부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FTA 체결 전후 뚜렷한 수출입 물품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인도는 총 수출 대비 FTA 특혜 대상이 되는 수출 금액이 68.8%에 달한다. 향후 기업의 FTA 활용 대상 품목 발굴에 의해 FTA 활용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계류는 對인도 수출의 32.6%<sup>31)</sup>를 점유하는 주요 수출산업으로 FTA 활용 저조 원인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총 수출에서 FTA 특혜 수출이 가능한 금액이 73.1%에 달하나, 실제 활용비중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인도에 기계류를 수출하는 기업을 FTA 활용 증진의 주요 타겟 대상으로 선정하여 컨설팅, 교육 등 한·인도 CEPA 활용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표 3-3 | 한·인도 CEPA의 특혜 수출입 대상 현황(2012)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수입		
	FTA 대상수출	전체수출 실적	비중	FTA 대상수입	전체수입 실적	비중
광 산 물	874	900	97.1	182	4,015	4.5
기 계 류	2,806	3,837	73.1	144	164	87.7
농림수산물	8	9	91.8	330	674	48.9
생 활 용 품	47	48	99.3	17	19	94.1
섬 유 류	97	165	58.8	264	294	89.8
잡 제 품	12	14	87.8	14	40	35.3
전자전기제품	622	1,639	37.9	76	93	81.2
철강금속제품	2,192	2,260	97	338	823	41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62	174	35.6	77	79	97
화학공업제품	1,392	2,741	50.8	546	689	79.3
합계	8,113	11,787	68.8	1,988	6,891	28.8

주 : MTI 1단위 기준

31) 3,837(백만불)/11,787(백만불)\*100

## II. FTA 체결국(ASEAN·인도)에서의 발효 전후 한·중·일 교역 변화

한·ASEAN FTA체결 이후 對한 수출입의  
상대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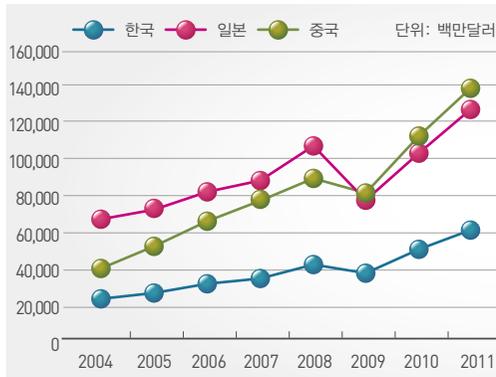
### 1) ASEAN의 對 한·중·일 교역

ASEAN의 對한 FTA 체결전 3년('04~'06년)간 ASEAN 3국(한국, 일본,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각각 15.2%, 10.9%, 26.6%로 중국, 한국, 일본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ASEAN FTA 이후 3년의 기간을 비교해 보면, 한·ASEAN FTA체결 이후 3년('07~'09년)간 한국, 일본,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율은 4.0%, -6.1%, 1.9%로 일본과 중국의 수출 증가율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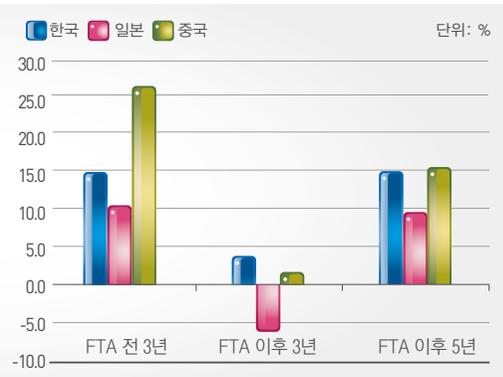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한·ASEAN FTA체결 이후 5년('07~'11년)을 보아도, 對한 수출 증가율은 15.3%로 일본(9.7%)을 상회하고 있으나, 중국(15.6%)과는 유사한 수준이다.

ASEAN의 對한 FTA 체결 전 3년('04~'06년) ASEAN 3국(한국, 일본, 중국)의 수입증가율은 각각 20.1%, 3.2%, 27.0%로 중국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중국·ASEAN FTA('05.7)가 발효 되면서, ASEAN 시장을 중국이 선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ASEAN FTA 이후 3년의 기간을 비교해 보면, 한·ASEAN FTA체결 이후 3년('07~'09년) 對한, 對일, 對중 수출 증가율은 5.5%, -3.6%, 1.6%로 일본과 중국의 수입 증가율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출도 동일하다. 당시의 글로벌 위기의 전세계적 여파가 교역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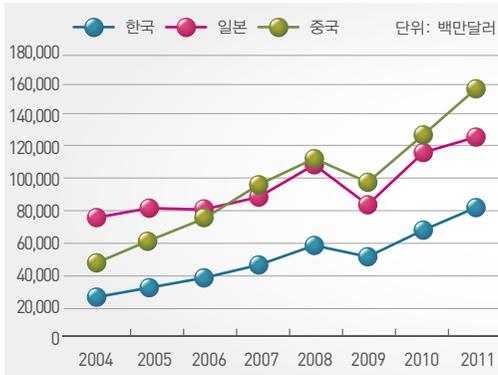
| 그림 3-8 | ASEAN 對한·중·일 수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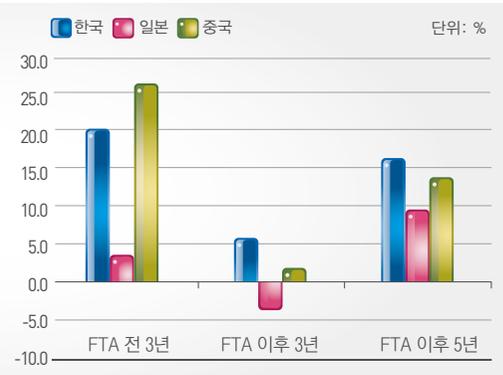
| 그림 3-9 | FTA 전후 對한·중·일 수출 증가율 비교



| 그림 3-10 | ASEAN의 對한·중·일 수입 비교



| 그림 3-11 | FTA 전후 對한·중·일 수입 증가율 비교



전체적으로 한·ASEAN FTA체결 이후 5년(07~11년)을 보면, 對한 수입 증가율은 16.2%로 일본(9.2%)을 상회하고 있으나, 중국(13.5%)과는 유사한 수준이다. 중국·ASEAN FTA(05.7), 일·ASEAN CEPA(08.12)가 각각 ASEAN 시장에 대한 한·중·일의 경합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중국의 경제적 위상 강화와 더불어 한국과 중국의 ASEAN 시장 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인도의 對 한·중·일 교역

### 한·인도 CEPA 체결 이후 대한 수출입

#### 영향 제한적

인도의 對세계 수출은 5년간(07~11년) 연평균 18.9%의 성장추세에 있다. 한국과의 CEPA 체결전 3

년(07~09년)간 인도의 평균 對세계 수출증가율이 3.6%인 가운데, 對한수출은 16.1%로 CEPA 체결 전 이미 한국으로의 수출은 對세계 수출을 상회하였다. 동기간 일본은 -6.0%, 중국은 -0.2%로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다.

한·인도 CEPA 체결 이후 2년(10~11년)동안 수출증가율은 對세계 1.4%, 한국 1.3%, 일본 1.2%, 중국 1.1%로 대부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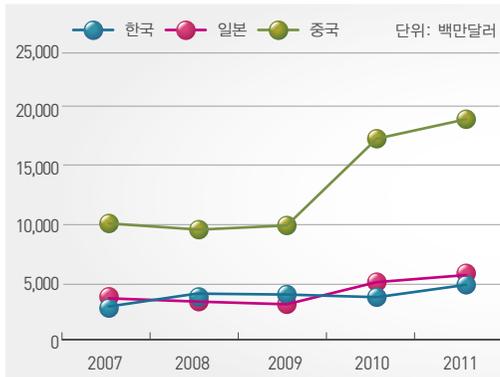
한국과의 CEPA 체결전 3년(07~09년) 인도의 對한 수입은 17.1%로 CEPA 체결 전 한국으로의 수입은 수출과 유사하게 對세계 수입증가율(4.7%)을 상회하였다. 동기간 일본은 4.1%, 중국은 8.1%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로의 수입보다는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03. 우리나라 체결 FTA국가의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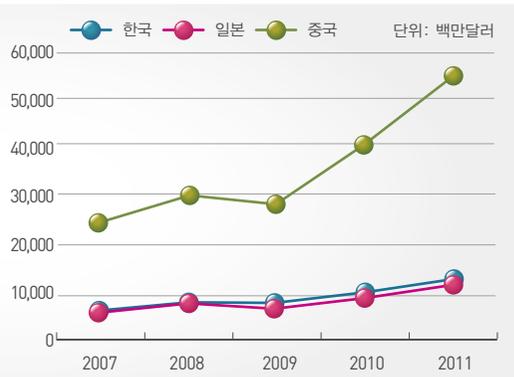
한편, 인도정부는 정책적으로 MFN 세율<sup>32)</sup>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2010년 1월 한·인도 CEPA 발효 당시 양자 특혜세율이 MFN 세율보다 높은 품목이 존재하는 등 모순구조가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한·인도 CEPA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소로서 양국 협조 하에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 그림 3-12 | 인도의 對한·중·일 수출비교



| 그림 3-13 | 인도의 對한·중·일 수입비교



### III. 아시아권 국가와의 FTA 이행과 시사점

#### 1) 한·ASEAN FTA와 교역 : 무역의 확장과 수출품목 재배분

한·ASEAN FTA발효 이후 무역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07년 대비 對ASEAN 수출은 2.0배, 수입은 1.6배, 무역수지는 4.8배 증가하였다.

ASEAN은 FTA 체결 이후 광산물, 기계류 등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FTA 체결 전 전자전기제품에만

집중되어 있던 수출구조가 기계류, 철강금속제품, 광산물 등으로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수입부분의 경우 광산물은 FTA 체결 이전 대 ASEAN 전체 수입액의 약 37%를 점유하고, FTA 체결 이후에는 약 40%로 증가하였다. FTA 체결 전 광산물과 전기전자제품에만 집중되어 있던 수입구조가 FTA 이후 원재료 1차 산업인 광산물은 집중이 강화되고 고차산업인 전자전기제품은 비중이 축소되는 것이 특징이다.

32) FTA 용어집 14번 참조

## 2) 한·인도 CEPA와 교역 : 무역의 확장, 수출입 구조의 유지

인도와의 교역 역시 지속적으로 확장 추세에 있으며 최근 6년간('07~'12년) 수출은 1.8배 증가하였다. 2010년 FTA 발효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 등 세계 경제의 위축으로 FTA 발효 후 3년간 수출은 정체하였으나, 수입은 1.2배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감소되었다.

FTA 체결 전 기계류에 집중되었던 수출구조는 FTA 체결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광산물과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류 등 일부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FTA 전후 수출입 구조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수입 역시 광산물에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FTA 이후에도 이러한 수입구조는 유지되고 있다.

## 3) 거대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 논의 시작, 아시아권 FTA 이행 모니터링 지속 필요

2013년 1분기 현재 우리나라의 총 무역 가운데 FTA 무역 비중이 12.1%('08년) → 35.2%('12년)로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권 국가는 우리나라 FTA 국가 교역 가운데 무역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SEAN과 인도는 성장잠재력이 기대되는 국가군이다. 우선, ASEAN은 발효 이후 5년간 교역량이 2배이

상 증가하는 등 선진국 시장위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도 역시 12억 인구의 거대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다음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이다.

인도는 현재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로 수출 둔화 및 고유가, 정치불안으로 다소 침체를 겪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한편, ASEAN은 한·중·일 모두와 현재 FTA를 발효하고 있다. ASEAN 시장진출 및 선점을 위한 삼국간 경합이 치열한 가운데,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ASEAN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 6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REC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sup>33)</sup>가 구체화되면서 2013년 5월 제1차 공식 협상이 개최되었다.

추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시장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세계 GDP의 28.4%를 차지하는 동아시아경제권 통합 논의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아시아 경제권과의 FTA의 이행 및 활용 현황에 대한 지속·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3)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 FTA 용어집 15번 참조



# 04

##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농림수산물



CHINA

KOREA

JAPAN

AUSTRALIA

##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 농림수산물



■ 분석 배경 : 우리나라는 한국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농림수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FTA협상때마다 농림수산물은 주요 이슈가 되어왔다. 따라서 3장에서는 FTA별로 농림수산물의 교역현황 및 특혜 수출입 동향을 통해 협정별 특징 및 현황을 살펴본다.

■ 분석 범위 : 농림수산물

### I. 농림수산물 교역동향 및 주요품목

#### 1) 농림수산물 교역동향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의 2012년 對세계 수출은 72억불로 전년대비 4% 증가, 수입은 310억불로, 전년대비 3.5% 감소하였다. FTA 체결 국가와의 수출은 18억불, 수입은 176억불을 기록하였다.

한편 2012년 농림수산물 전체 수출입 가운데, FTA 국가로의 수출은 25%, 수입은 57%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의 對세계 실적대비 FTA 국가로의 수출비중은 지난 3개년('10~'12년) 평균 27%, 수입은 57%를 차지하고 있다.

| 표 4-1 |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수출입 현황(2010~2012)

단위 : 백만달러

연도	수출			수입		
	對 세계	對 FTA	FTA 점유율 <sup>34)</sup>	對 세계	對 FTA	FTA 점유율
2010	5,570	1,585	28%	24,251	13,719	57%
2011	6,936	1,906	27%	32,126	18,157	57%
2012	7,214	1,833	25%	31,010	17,650	57%

34) 농림수산물 대세계 수출실적 중 FTA 국가로의 수출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

## 2) 농림수산물 수출 품목

\* '12년 FTA 상대국 수출액 1억불 이상 품목 :  
 참치, 제조담배, 면주, 커피조제품, 모류  
 \* 기타조개, 기타주류, 정당, 사탕은 FTA  
 상대국으로의 수출비중이 저조

2012년 농림수산물 수출상위 품목은 제조담배, 참치, 기타어류, 면류, 커피조제품 등이다. 수출상위 20대 품목 가운데 FTA 체결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은 모류<sup>35)</sup>(76%) > 참치(57%) > 면류(43%) > 커피조제품(41%) > 기타음료(40%)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4-2 | 농림수산물 주요 수출 품목과 FTA 점유율(2012)

단위 : 천달러

순위	품목	對 세계 수출	對 FTA 수출 <sup>36)</sup>	*비중
1	제조담배	614,340	160,735	26%
2	참치	445,450	252,640	57%
3	기타어류	424,478	86,441	20%
4	면류	315,628	136,916	43%
5	커피조제품	297,230	122,196	41%
6	정당	262,874	14,915	6%
7	어육	257,894	51,399	20%
8	기타농산가공품	253,695	40,150	16%
9	기타주류	207,174	8,759	4%
10	기타수산가공품	203,543	62,934	31%
11	로얄제리	185,738	69,231	37%
12	기타해조류	174,765	65,650	38%
13	기타음료	157,947	62,766	40%
14	모류	139,929	105,951	76%
15	인삼류	133,860	29,194	22%
16	소주	126,813	14,820	12%
17	오징어	115,830	43,224	37%
18	기타조개	109,430	2,389	2%
19	비스킷	108,882	29,562	27%
20	사탕	106,280	6,572	6%

\*비중 : 對FTA 수출 / 對세계 수출\*100

35) Animal hair

36) FTA국으로의 수출을 의미함

### 3) 농림수산물 수입 품목

\* 2012년 FTA 상대국 수입 상위품목 :  
사료, 박류, 쇠고기, 천연고무, 돼지고기

\* 쇠고기, 원당, 기타어류, 옥수수, 면, 원목, 대두  
유는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저조

2012년 농림수산물 수입상위 품목은 사료, 박류, 쇠고기, 천연고무, 돼지고기 등이다. 수입상위 20대 품목 가운데, FTA 체결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은 천연고무(100%) > 기타식물성 유지(92%) > 돼지고기(86%) > 로알제리(81%)등으로 조사되었다.

[ 표 4-3 | 농림수산물 주요 수입 품목과 FTA 점유율(2012)

단위 : 천달러

순위	품목	對 세계 수입	對 FTA 수입	*비중
1	사료	3,499,303	1,720,894	49%
2	박류	1,598,743	644,663	40%
3	쇠고기	1,410,078	522,518	37%
4	천연고무	1,372,738	1,371,126	100%
5	돼지고기	1,206,562	1,035,914	86%
6	원당	986,433	281,401	29%
7	밀	866,640	441,172	51%
8	기타어류	799,970	275,533	34%
9	기타식물성유지	759,986	702,243	92%
10	대두	746,697	310,477	42%
11	옥수수	724,021	194,184	27%
12	면	688,858	178,770	26%
13	원목	655,476	141,445	22%
14	합판	592,346	393,222	66%
15	로알제리	497,374	403,349	81%
16	기타수산물가공품	491,141	330,885	67%
17	커피	477,206	213,204	45%
18	제재목	472,967	194,225	41%
19	기타농산물가공품	458,404	244,393	53%
20	대두유	424,650	88,676	21%

\*비중 : 對FTA 수입 / 對세계 수입\*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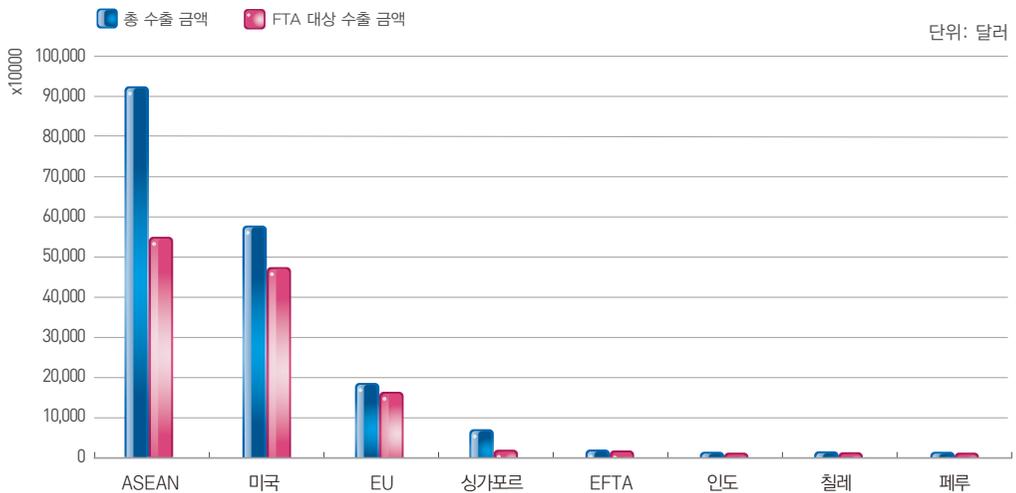
## II. 농림수산물 FTA 특혜 교역 및 특징

### 1) 농림수산물 FTA 특혜 수출

2012년 농림수산물 중 FTA 특혜가 가능한 'FTA 대

상품목'<sup>37)</sup>의 수출액은 약 12억불, 그 가운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FTA 활용 수출액은 약  
3.3억불로 26.4%의 활용비중을 보이고 있다.

| 그림 4-1 | 농림수산물 특혜수출 동향(2012)



미국, EU, EFTA 등 선진경제권으로의 높은  
수출 활용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의 FTA국가로의 수출은 ASEAN,  
미국, EU 순이며, 그 외 국가의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EU로 수출되는 품목은 FTA 상대국의 관세철폐  
수준이 높아 FTA 대상품목의 비중이 높은 반면,

ASEAN의 경우 관세철폐 수준이 낮아 FTA 대상품목  
의 비중도 낮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ASEAN은 FTA 대상품목의 수출액이 약 5.5억불로  
수출규모가 크지만 FTA 활용 수출액은 약 6백만불  
에 그쳐 농림수산물의 FTA 수출활용 수준이 극히 미  
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7) FTA 협정 체결로 상대국의 수입관세가 하락하여 우리나라가 수출시 FTA 특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의미함.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 농림수산물

對ASEAN 수출 품목 가운데 FTA 대상품목의 수출액 기준 상위 10개는 참치, 커피조제품, 면류, 김, 닭고기, 물, 모류, 기타, 어류, 분유, 오징어 등이며, 이들 가운데 FTA를 활용하는 품목은 면류 1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인도 역시 ASEAN과 마찬가지로 FTA 대상 품목의 활용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미국과 EU는 FTA 대상품목의 수출금액이 각각 약 4.9억불, 1.8억불이며, FTA 활용 수출액도 각각 2.3억불, 0.87억불로 절반 수준의 FTA 활용을 보이고 있다. 對미 수출 품목 가운데 FTA 대상 품목의 수출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은 면류, 해조류, 음료, 제조담배, 배, 기타 농산가공품, 비스킷, 기타 수산가공품,

기타 소스류, 로얄제리 등으로 제조 담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FTA 수출 활용 비중은 43~66%로 조사되었다.

EU는 참치, 면류, 어육, 기타어류, 기타음료, 로얄제리, 기타 수산가공품, 오징어, 느타리버섯, 기타 농산가공품 등으로 이 가운데 어육과 수산가공품이 각각 98%, 77%의 높은 활용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EFTA는 FTA 대상품목의 수출규모는 3.5백만 불로 적은 규모이지만 수출활용 비중이 90%에 육박하여 대부분의 품목이 FTA 특혜를 통해 수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표 4-4 | 농림수산물 협정별 FTA 특혜수출의 주요품목(2012)

협정	주요 품목	특 징
AS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치, 커피조제품, 면류</li> <li>김, 닭고기, 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국가로의 수출규모 큰편으로 나타남</li> <li>FTA 대상 품목의 범위가 협소<sup>38)</sup></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류, 김, 기타음료, 배, 비스킷</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 규모 대비 FTA 활용이 활발</li> </ul>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류, 어류 기타음료,</li> <li>기타 수산가공품, 느타리버섯</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 규모 대비 FTA 활용이 활발</li> <li>참치, 기타어류<sup>39)</sup>, 로얄제리, 오징어, 기타 농산가공품 (FTA 활용기대 효과는 높으나 활용비중 저조)</li> </ul>
E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류, 단백질류, 인삼류</li> <li>기타소스류, 느타리버섯</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품목 대부분이 FTA 활용됨</li> <li>발효된 FTA 중 가장 높은 활용비중 보임</li> </ul>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수산가공품, 종자류, 면류</li> <li>껌, 과일주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품목의 FTA 적용실적 낮음<sup>40)</sup> (기타 수산가공품을 제외)</li> </ul>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류, 기타음료, 기타해조류</li> <li>빵, 인삼류, 커피조제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상위 품목들의 FTA 평균 활용비중이 낮음</li> <li>FTA 활용이 미미함</li> </ul>
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곡류가공품, 기타음료, 제조담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활용은 평균수준</li> </ul>

38) 관세철폐 수준이 낮아 실질적으로 FTA 관세혜택이 가능한 FTA 대상품목의 비중이 50%수준

39) 03류에 해당하는 수산물의 경우 한·EU 협정상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에 따라 FTA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40)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절차의 부담, 인도 내 통관지연 등이 FTA 활용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2) 농림수산물 FTA 특혜 수입

2012년 농림수산물 중 FTA 대상품목의 수입액은 약 111억불, FTA 활용 수입액은 약 85억불로 약 76%의 활용비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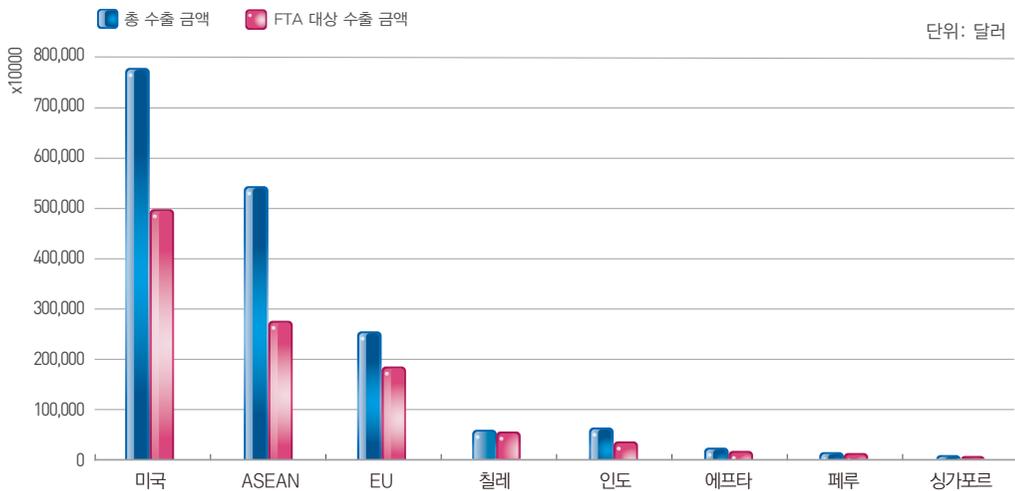
농림수산물의 FTA국가로의 수입액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미국, ASEAN, EU의 규모가 가장 크고 그 외 국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물 수입에 대한 협정별 관세양허 수준이 다르며, 對미국 총수입의 65%, 對EU 총수입의 74%, 對ASEAN 총수입의 53%가 FTA 특혜가 가능한 품목이다.

## 발효시점과 FTA 수입활용의 양의 상관관계

FTA 수입활용과 협정 발효 시점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발효시점이 오래된 FTA일수록 높은 활용비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FTA 무역환경이 시장 내 안정화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농림수산물의 협정별 특혜수입 활용비율은 평균 7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다만 인도의 활용비율만 타 협상체결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칠레는 FTA 대상품목의 수입액이 5.2억불, FTA 적용 수입금액이 5억불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 특혜 수입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對칠레 수입 품목

그림 4-2 | 2012년 협정별 농림수산물 수입현황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 농림수산물

가운데,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 상위 10대 품목은 포도, 돼지고기, 제재목, 기타어류, 기타 수산가공품, 포도주, 과일주스, 오징어, 기타 과일, 호도 등이다.

칠레와 마찬가지로 EFTA도 높은 수입활용비중을 보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기타어류, 커피, 어육, 식물성액즙, 초콜릿, 치즈, 기타 농수산물가공품 등이다.

이 가운데, 치즈와 제조담배는 FTA 활용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치즈의 경우 엄격한 양허 수준이 FTA 활용 저조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외 EU,

미국 등도 주요 품목에 대해 활발한 FTA 특혜 수입 실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인도는 농림수산물 총 수입액은 6.7억불, FTA 대상수입액 3.3억불, FTA 적용 수입액 1.5억불로 FTA 수입 활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2012년 인도 수입품목 가운데,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 상위 10대 품목은 박류, 참깨, 잎담배, 식물성액즙, 기타 식물성 유지, 어육, 대두, 쌀 등이다. 이 가운데 박류와 어육, 대두를 제외한 품목은 FTA 특혜 수입실적이 저조하다.

| 표 4-5 | 농림수산물 협정별 FTA 특혜수입 현황(2012)

단위 :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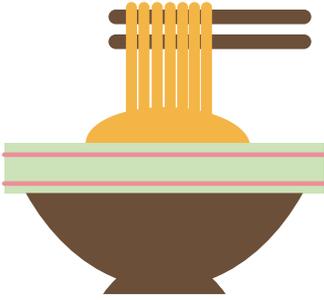
협정	총 수입액	FTA 대상 수입액	FTA 적용 수입액
미국	7,878	5,085	3,821
ASEAN	5,470	2,882	2,137
EU	2,649	1,972	1,578
인도	674	330	156
칠레	563	522	510
EFTA	190	145	125
페루	132	124	118
싱가포르	96	87	72

| 표 4-6 | 농림수산물 협정별 FTA 특혜수입의 주요품목(2012)

협정	주요품목	특징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쇠고기, 밀, 돼지고기, 사료</li> <li>• 오렌지, 아몬드, 치즈, 호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수산물 수입 1위 국가로 수입규모가 압도적임</li> <li>• FTA 활용비중 높게 나타남</li> <li>• 로알제리와 오렌지<sup>41)</sup>의 경우 FTA 특혜수입 규모는 큰 편이나, 상대적으로 FTA 활용비중은 저조</li> </ul>
AS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식물성유지, 박류, 문어</li> <li>• 어육, 당밀, 기타목재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활용은 평균수준</li> <li>• 상위 10대 품목의 평균 FTA 활용비중이 매우 높음</li> <li>• 새우<sup>42)</sup>, 기타어류, 천연고무 활용비중 낮음</li> </ul>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고기, 위스키, 포도주</li> <li>• 기타낙농품, 사료, 초콜렛, 치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품목의 FTA 활용비중이 높음</li> </ul>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류, 참깨, 잎담배</li> <li>• 식물성액즙, 기타 식물성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FTA국보다 FTA 혜택품목 비중 낮음</li> <li>• FTA 활용비중 가장 낮음</li> </ul>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도, 돼지고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 농림수산물 대부분 FTA 특혜가 적용됨</li> <li>• FTA 활용비중도 매우 높음</li> </ul>
E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어류, 커피, 어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상위 품목 FTA 활용비중 높음</li> <li>• 치즈<sup>43)</sup>와 제조담배 활용비중 10% 미만</li> </ul>
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피, 오징어, 포도</li> <li>• 어육, 바나나, 수산부산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규모는 적은편임</li> <li>• FTA 활용가능 품목 및 FTA 활용비중 높음</li> </ul>

41) 로알제리는 복잡한 원산지 결정기준, 오렌지는 계절관세 적용이 FTA 활용비중 저조의 원인으로 보임  
 42) 쿼터제한으로 활용비중 저조  
 43) 치즈는 엄격한 양허 수준이 FTA 활용 저조 원인

### 3) FTA 수출유망 품목, 라면



우리나라에서 라면시장은 지난 1998년 처음 1조원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라

면류는 HS 10단위를 기준으로 10개 품목으로 분류되는데, 면류 중에는 라면(HS 1902.30-1010)의 수출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라면은 면과 스프로 구성된 간편한 즉석식품이다. 특히 장기간 보관 및 유통이 용이하고, 먹기가 편리하다는 점에서 수출 품목으로서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다.

면 수출실적도 빠른 속도로 증가추세에 있다.

2012년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국으로의 라면 수출과 FTA 활용비중은 다음의 [표 4-7]과 같다. 라면의 총 수출 규모는 아세안, 미국, EU 순으로 근거리 식문화권인 아세안과, 우리나라의 교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미국·EU가 주요 수출 지역이다.

최근에는 전통적 인기상품 외에 '신라면블랙' '나가사끼짬뽕' '꼬꼬면' '기스면' 같은 퓨전제품들이 한류 열풍을 타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라면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 국가(수출규모 67백만불)에서 관세를 철폐하고 있어 FTA를 활용한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이기도 하다.

그러면, 라면의 수출과 FTA는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표 4-7]을 통해 살펴보자. 표에서 나타나듯이,

[ 표 4-7 | 라면의 협정별 특혜수출 현황(2012)

단위 : 백만달러, %

협정	총수출	FTA 대상수출	FTA 적용수출	FTA 활용비중
미국	24	24	12	52
아세안 <sup>44)</sup>	25	21	-	1
EU	13	13	12	93
EFTA	3	3	3	99
칠레	1	1	-	41
인도	-	-	-	0
페루	-	-	-	-

44) 총수출 실적과 FTA 대상수출실적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한·아세안 FTA는 아세안 내 국가별로 개방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임. 즉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라면이 FTA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모든 라면의 수출이 FTA의 특혜를 활용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여 수출한 국가는 미국, EU, EFTA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FTA 활용비중은 EFTA > EU > 미국 순으로 최대 수출국인 미국도 50%미만으로 높지 않다.

이와 같이 국가별로 FTA 활용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데에는 원산지 결정기준<sup>45)</sup>의 엄격성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라면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의 역내생산을 요구하는 원재료완전생산기준부터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 다양하다.

FTA 체결 국가별로 살펴보면, FTA 활용 비중이 낮은 칠레·인도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조합기준<sup>46)</sup>으로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FTA 활용이 높은 국가군인 EU·EFTA·미국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단일 기준으로 다소 완화된 것이 확인된다. 결국 동일한 라면을 대상으로 FTA 국가 간 특혜 수출의 활용비중의 높고 낮은 원인은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도 그 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 라면의 FTA 활용비중이 높은 EU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자. 우선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라면의 생산공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라면은 밀가루와 물을 혼합하는 원료배합단계 → 라면의 면을 생성하는 성형단계 → 라면을 기름에 튀기는 유탕공정 → 포장공정 등을 거쳐 완성된다.

| 표 4-8 | 라면의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과 FTA 활용비중 비교

협정 및 원산지결정기준	FTA 활용비중	협정 및 원산지결정기준	FTA 활용비중
칠레 (CTH+ RVC 45% / 30 %)	칠레 (41%)	EFTA (원재료 완전생산기준) <sup>47)</sup>	EFTA (99%)
아세안 (CTH or RVC 40 %)	아세안 (1%)	EU (CTH)	EU (93%)
인도 (CTH +RVC 40 %)	인도 (0%)	미국 (CC)	미국 (52%)

45) FTA 용어집 2번 참조  
46) FTA 용어집 3번 참조  
47) FTA 용어집 4번 참조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 농림수산물

한·EU FTA 협정에서 라면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제조공정에서 원재료의 세번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원재료가 다른 국가에서 수입된 물품이라도 라면은 한국산 제품으로 특허 수출이 가능하다.

즉, 라면은 주원료인 밀가루(HS 1101.00-1000호)가 국외산이어도 원료 배합 이후 식물유를 사용하여 기름에 튀기는 유탕공정을 거치면서 라면(HS 1902.30-1010호)으로 세번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산제품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조합기준을 채택하는 칠레나 인도는 세번변경 이외에도 일정수준

이상 부가가치를 한국에서 창출한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산지결정기준으로서 단일기준을 사용하는 EU는 상대적으로 조합기준을 사용하는 칠레나 인도보다 달성하기 용이한 것이다.

한편, 칠레나 인도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타국가에 비해 엄격한 편이긴 하지만, 향후 FTA를 통해 라면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해당 국가의 원산지 기준을 잘 활용한다면, 더 큰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표 4-9 | 라면 제조공정



### III. 시사점 및 활용방안

#### 1) 농림수산물의 FTA 수출 활용비중

농림수산물 수출시 FTA가 적극 활용되는 국가는 미국, EU, 칠레, 인도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는 총수출 대비 FTA 점유율이 평균 90% 이상이며, 공통적으로 농림수산물 관세철폐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다.

농림수산물의 FTA 활용비중이 낮은 국가는 ASEAN, 페루가 해당되었다. 동 그룹은 공통적으로 총수출 대비 FTA 대상 수출 비중이 50% 이하이며, 장기 관세 철폐 및 양허제외 등의 이유로 FTA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협정별 농림수산물 FTA 수출 활용비중은 EFTA(90%), 미국 및 EU(47%), 페루(31%), 칠레(22%), 아세안·인도·싱가포르는 5%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FTA국의 주요 수출 농림수산품목은 참치, 면류, 커피제품, 로얄젤리, 제조담배 등이 이에 해당되었다.

#### 2) 농림수산물의 FTA 수입 활용비중

2012년 농림수산물 주요 수입국은 미국, ASEAN, EU로 나타났다. 또한, 농림수산물 수입에 대한 협정별 관세양허 수준이 다르며, 對미국 총수입의 65%, 對EU 총수입의 74%, 對아세안 총수입의 53%가 FTA 특혜가 가능한 품목이다.

| 표 4-10 | 협정별 농림수산물 특혜수출 FTA 활용 요약

구분	협정별 품목			
수출규모 1위 품목	칠레·미국·EFTA(면류) 	싱가포르(제조담배) 	ASEAN·EU(참치) 	
	인도(종자류) 	페루(로얄젤리) 		
	칠레(빵) 	EFTA(면류) 	ASEAN(제조담배) 	
FTA 활용 비중이 높은 품목	인도(기타수산물가공품) 	EU(어육) 	미국(로얄젤리) 	페루(곡류가공품)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 농림수산물

2012년 수입 농림수산물에 대한 평균 FTA 활용 수준은 76%이며, 칠레, 페루, 싱가포르는 90%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국(75%), EU(80%), ASEAN(74%), EFTA(86%)가 50%이상이며, 인도는 44%로 다소 낮은 편이다.

FTA 국가별 주요 수입 농림수산물품목은 차별화된 특징

FTA 협정별로 주요 수입 농림수산물품목은 차별화된 특징을 보이며, 협정별로 수입규모 1위 품목과 FTA 활용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각

국가의 수입규모 1위 품목은 칠레의 포도, 미국의 쇠고기, EU의 돼지고기 등이다.

다음으로 FTA 활용비중이 높은 품목은 미국은 밀, 사료, 아몬드 등이며, EU는 돼지고기, 포도주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칠레의 경우 FTA 특혜수입 상위 10대 품목의 평균 활용비중이 95%이상으로 타국가의 품목에 비해 활용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각 FTA별 특혜 수출입에서 나타나는 차별성은 앞으로 우리 기업이 FTA를 활용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표 4-11 | 협정별 농림수산물 특혜수입 FTA 활용 요약

구분	협정별 품목			
수입규모 1위 품목	칠레 (포도)	싱가포르 (코코아 조제품)	EFTA (기타어류)	ASEAN (기타식물성 유지)
				
	인도 (박류)	EU (돼지고기)	미국 (쇠고기)	페루 (기타수산물가공품)
				
FTA 활용 비중이 높은 품목	칠레(상위 10위 품목)	싱가포르 (코코아 조제품, 기타유지가공품, 밀가루)	EFTA (기타어류, 커피, 식물성액즙)	ASEAN (박류, 문어, 당밀)
	특혜수입상위 10개 품목의 평균 활용비중 높은 수준			
	인도 (박류, 어육)	EU (돼지고기, 포도주, 제재육)	미국 (밀, 사료, 아몬드)	페루 (커피, 포도, 바나나, 아스파라거스)
				

# 05

## FTA 교역 지도

CHINA 우리나라 FTA 체결국 현황

2013년 1분기 FTA 국가별 특혜수출입 실적

2013년 1분기 FTA 특혜 상위 수출입 5대 품목  
(MTI 3단위 기준) 및 주요 수출입 국가

KOREA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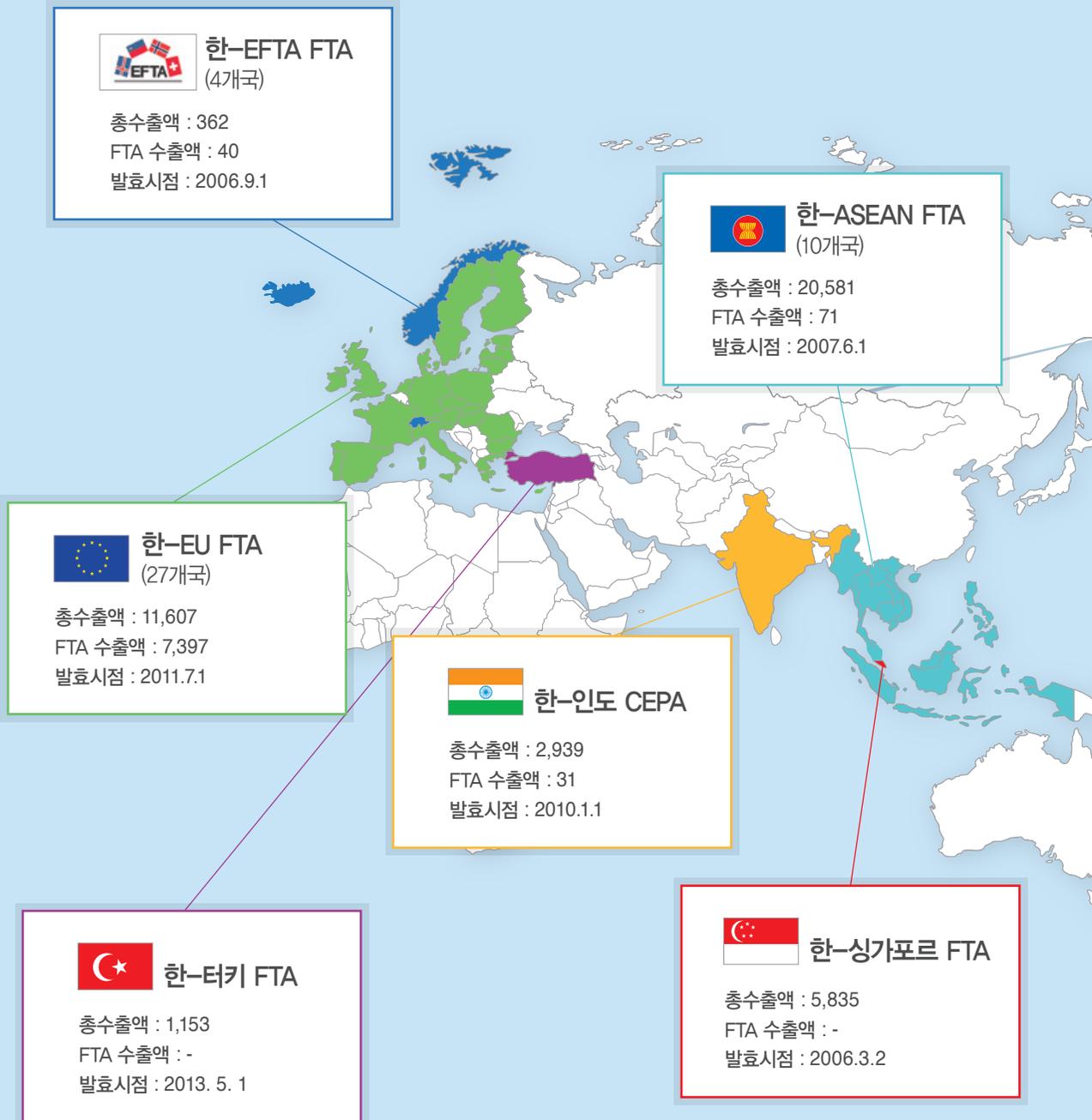
AUSTRA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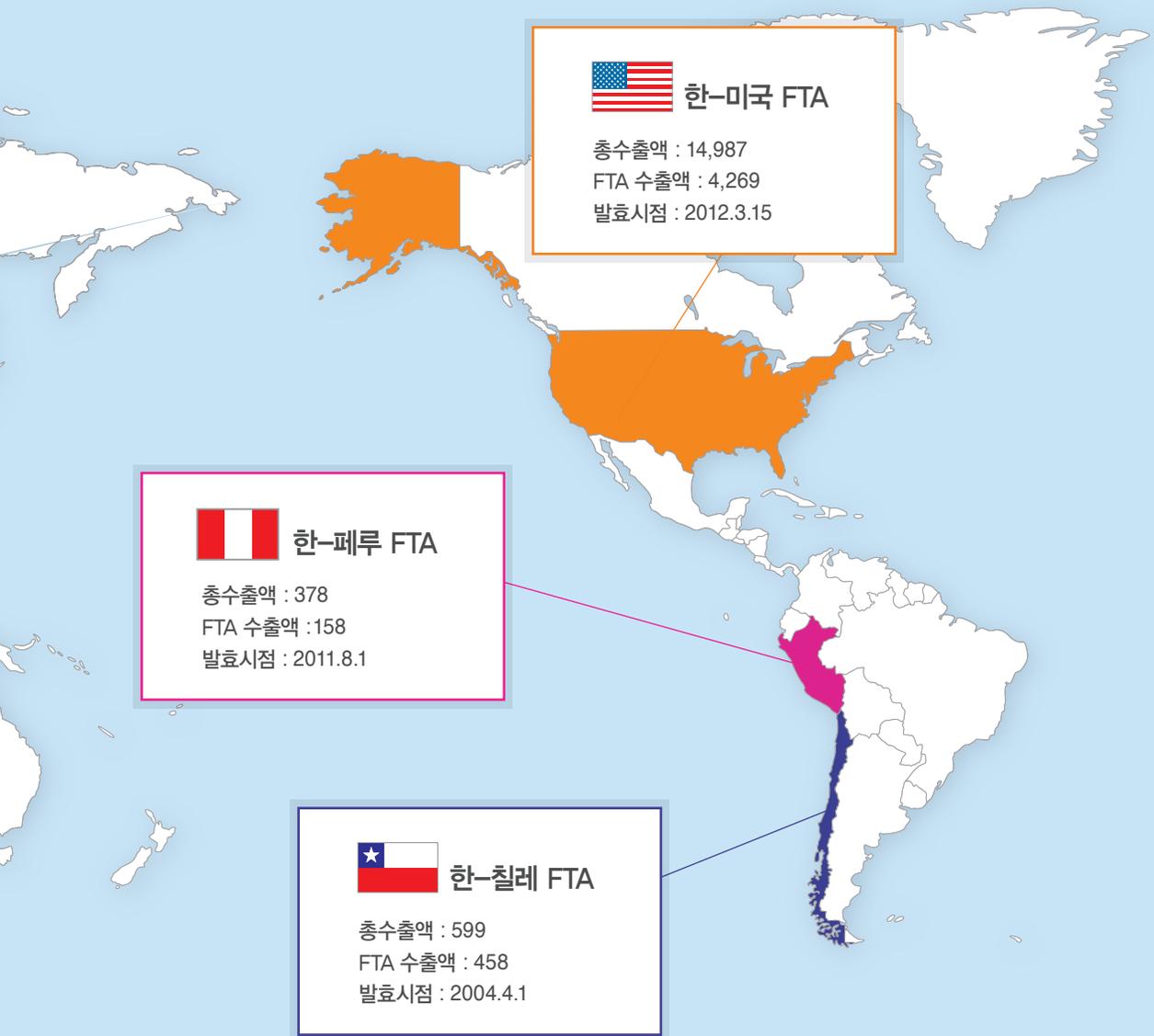
## 우리나라 FTA 체결국 현황

- **분석 배경** : 첫호에서는 우리나라의 FTA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FTA 체결현황과 2013년 1분기 특히 총수출입 실적을 살펴본다. 또한, 실질적으로 FTA를 활용하여 교역이 이뤄지는 주요품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2013년 1분기 FTA 상위 수출입 5대 품목(MTI 3단위 기준)과 주요 수출입국가를 알아보았다.

2013년 1분기 (단위 : 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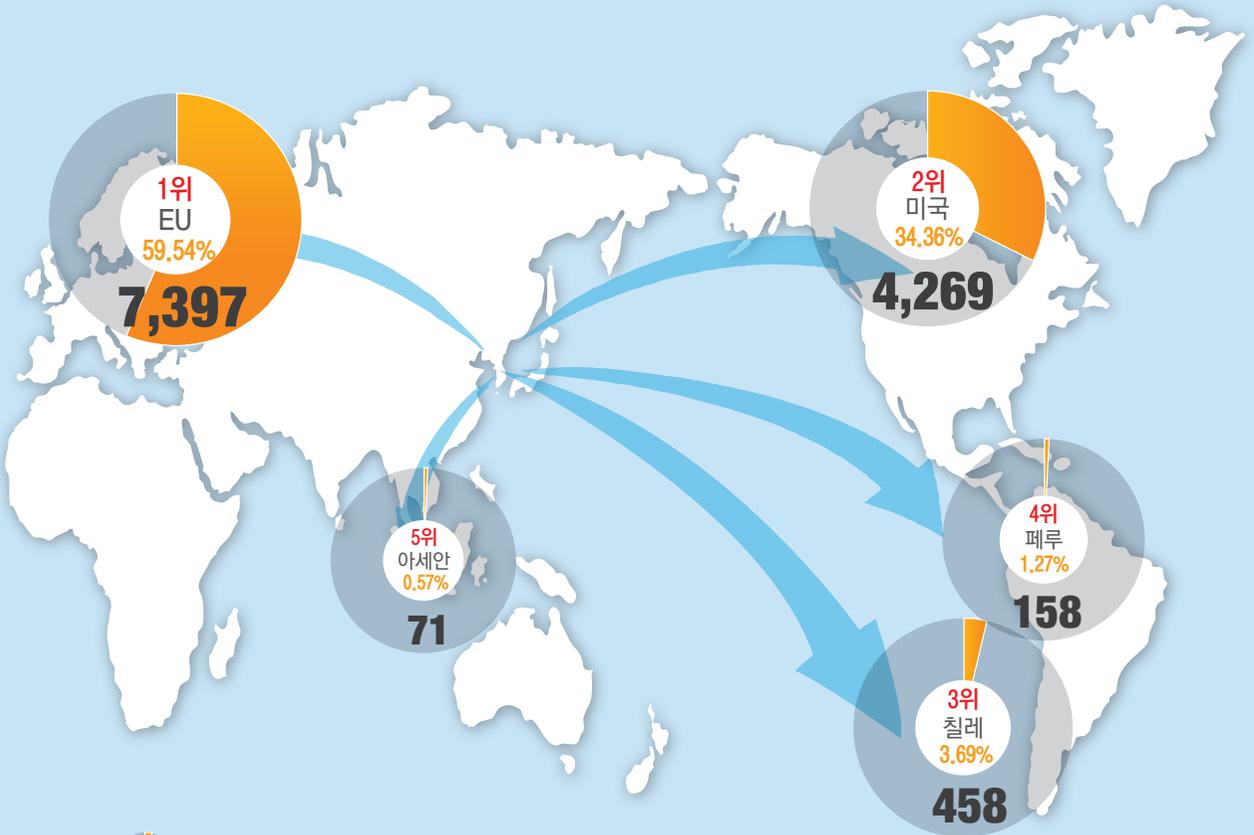


- **주요 내용** : 우리나라 FTA 체결국 현황, 2013년 1분기 FTA 국가별 특혜수출입 실적, 2013년 1분기 FTA특혜 상위 수출입 5대 품목(MTI 3단위 기준) 및 주요 수출입 국가



## 2013년 1분기 각 FTA별 특혜수출 현황

FTA 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124억불(9.18%)	1,229억불(90.82%)	1,353억불(100%)



% : 2013년 1분기 7개 FTA 국가의 특혜수출(총계)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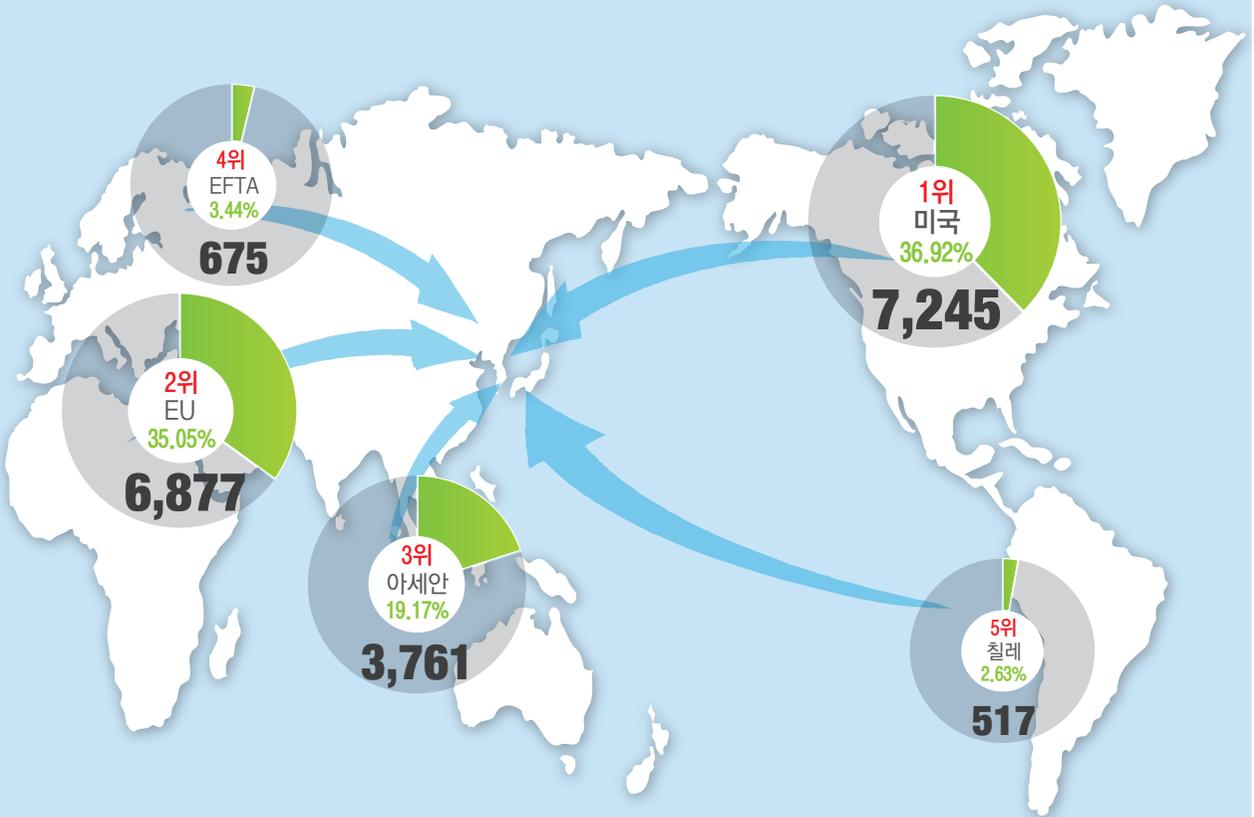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	2012년 1분기	2013년 1분기	증감	구성비중
1	EU	7,308	7,397	1.22	59.54
2	미국	928	4,269	360.22	34.36
3	칠레	437	458	4.84	3.69
4	페루	126	158	25.46	1.27
5	아세안	54	71	30.78	0.57
6	기타국가	401	71	-82.29	0.57
총 계		9,254	12,424	34.26	100

※ 주: 싱가포르를 아세안 10개국에 포함되므로 생략함  
일반수출: FTA 체결국(FTA 특혜 비적용 실적)과 비체결국 실적 포함됨 (이후 동일)

## 2013년 1분기 각 FTA별 특혜수입 현황

FTA 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196억불(15.13%)	1,100억불(84.87%)	1,296억불(100%)



%: 2013년 1분기 7개 FTA 국가의 특혜수입(총계)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백만달러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	2012년 1분기	2013년 1분기	증감	구성비중
1	미국	726	7,245	897.84	36.92
2	EU	5,638	6,877	21.97	35.05
3	아세안	6,425	3,761	-41.47	19.17
4	EFTA	903	675	-25.24	3.44
5	칠레	614	517	-15.85	2.63
6	기타국가	307	546	77.85	2.78
총 계		14,613	19,621	34.2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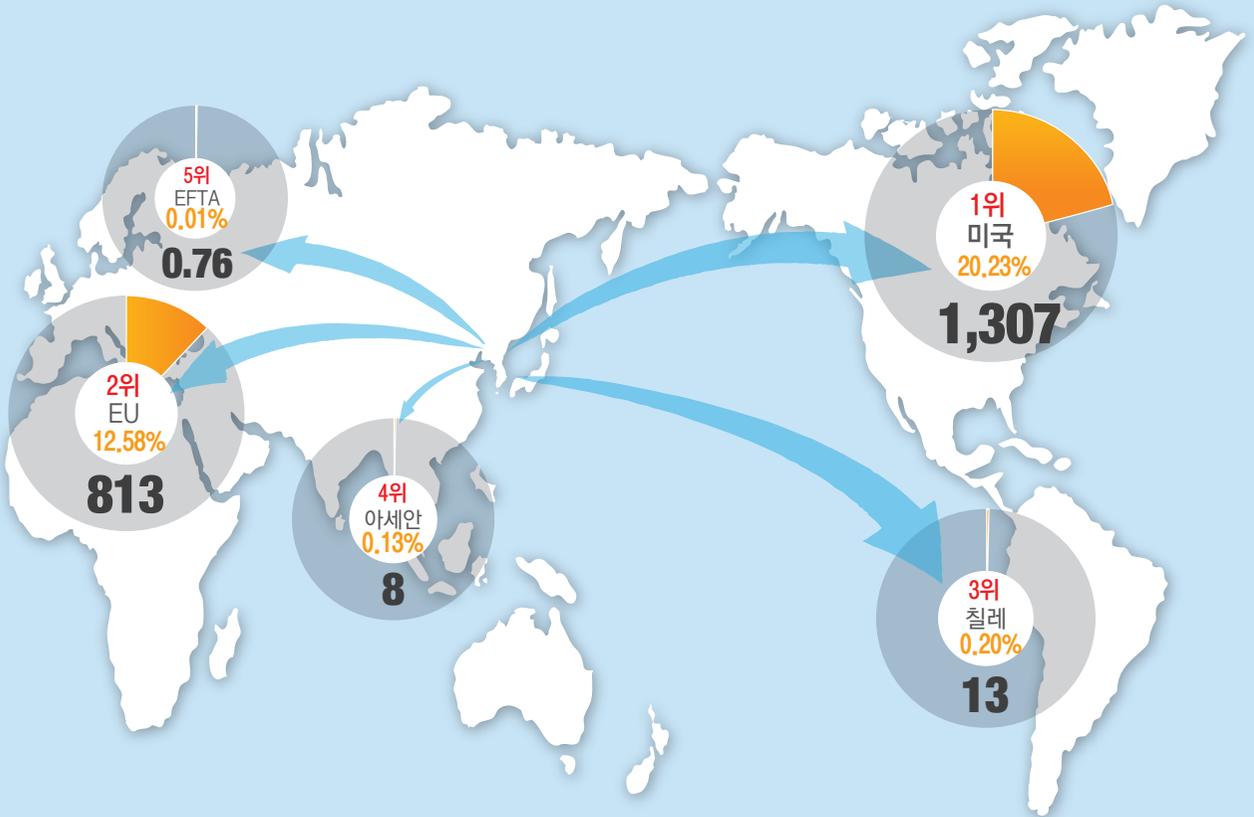
※ 주: 싱가포르를 아세안 10개국에 포함되므로 생략함  
일반수입: FTA 체결국(FTA 특혜 비적용 실적)과 비체결국 실적 포함됨 (이후 동일)

01. FTA 포커스  
02. FTA 최근 동향  
03. 우리나라 체결 FTA 국가의 교역 동향  
04. 신임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 농림수산물  
05. FTA 교역 지도

부록

## 2013년 1분기 FTA별 특혜수출 현황 : 자동차 부품

FTA 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21억불(33.15%)	43억불(66.85%)	64억불(100%)



! % :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실적 대비 해당 국가로의 자동차 부품 FTA 특혜실적  
백만달러

(단위 :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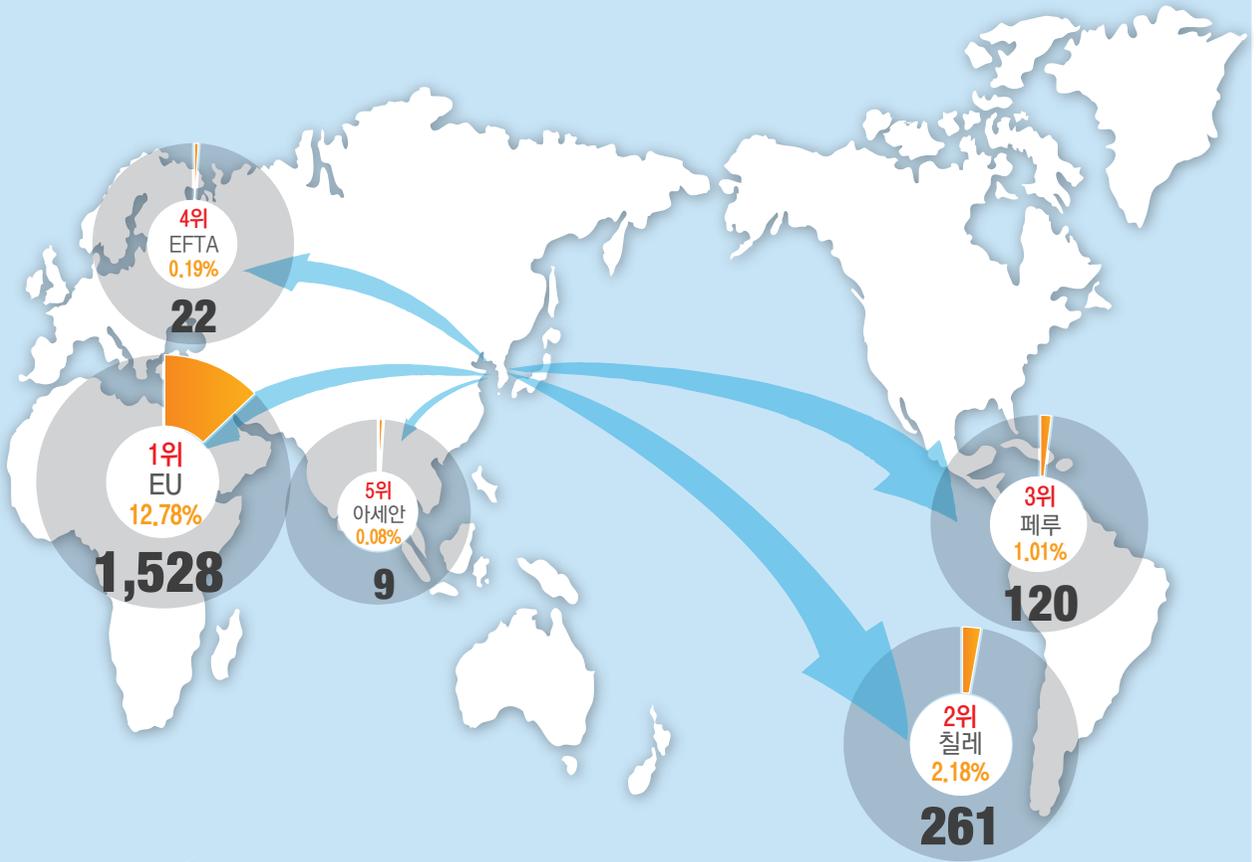
순위	국가	금액	FTA 특혜실적 대비비중	전체수출실적 대비 비중
1	미국	1,307	61.04	20.23
2	EU	813	37.95	12.58
3	칠레	13	0.59	0.20
4	아세안	8	0.38	0.13
5	EFTA	0.76	0.04	0.01
총 계		2,141	100	33.15



※ 주: MTI 3단위 기준  
자동차 부품의 FTA 특혜실적 중 인도는 실적이 미미하여 생략함

## 2013년 1분기 FTA별 특혜수출 현황 : 자동차

FTA 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19억불(16.30%)	100억불(83.70%)	119억불(100%)



% : 전체 자동차 수출실적 대비 해당 국가로의 자동차 FTA 특혜실적

(단위 :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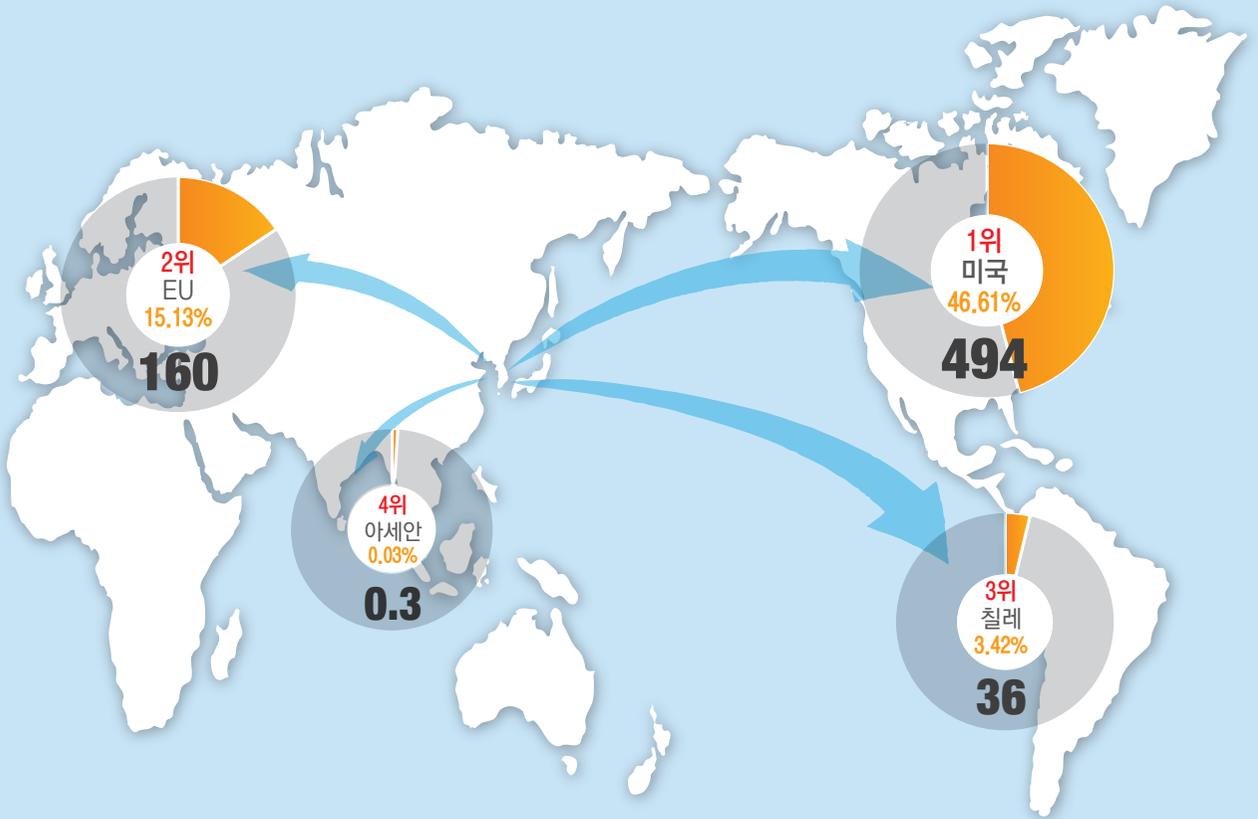
순위	국가	금액	FTA 특혜실적 대비비중	전체수출실적 대비 비중
1	EU	1,528	78.46	12.78
2	칠레	261	13.40	2.18
3	페루	120	6.18	1.01
4	EFTA	22	1.15	0.19
5	아세안	9	0.46	0.08
6	기타국가	7	0.36	0.06
총 계		1,948	100	16.30



※ 주: MTI 3단위 기준  
FTA체결국 중 FTA특혜실적에 나타나지 않는 국가는 실적이 없음

## 2013년 1분기 FTA별 특혜수출 현황 : 석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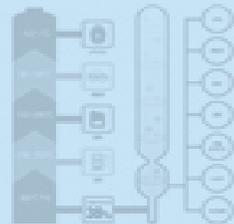
FTA 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6.9억불(65.19%)	3.6억불(34.81%)	10.6억불(100%)



%: 전체 석유제품 수출실적 대비 해당 국가로의 석유제품 FTA 특혜실적

(단위 :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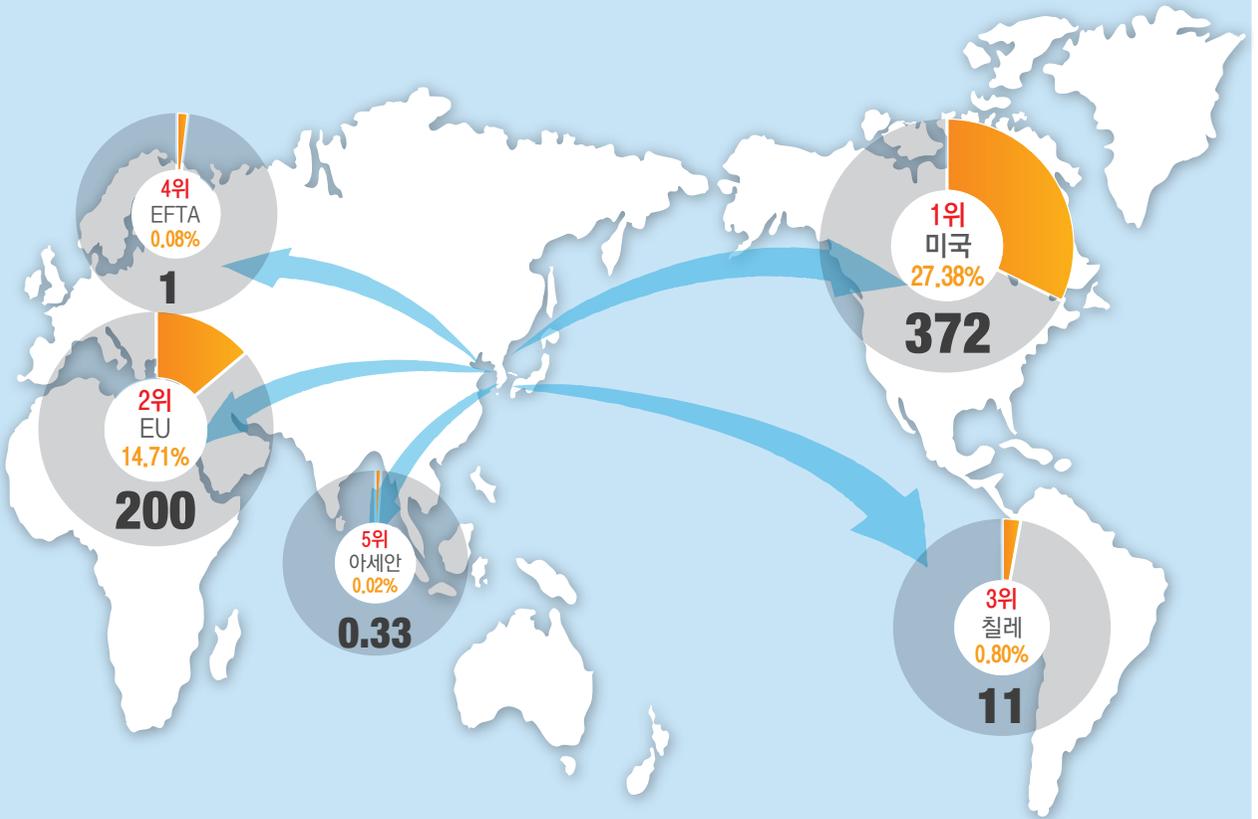
순위	국가	금액	FTA 특혜실적 대비비중	전체수출실적 대비 비중
1	미국	494	71.49	46.61
2	EU	160	23.22	15.13
3	칠레	36	5.25	3.42
4	아세안	0.3	0.04	0.03
총 계		691	100	65.19



※ 주: MTI 3단위 기준  
석유제품의 FTA 특혜실적 중 페루, 인도는 실적이 미미하여 생략함

## 2013년 1분기 FTA별 특혜수출 현황 : 고무제품

FTA 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5.8억불(43.01%)	7.7억불(56.99%)	13.5억불(100%)



: 전체 고무제품 수출실적 대비 해당 국가로의 고무제품 FTA 특혜실적  
 백만달러

(단위 :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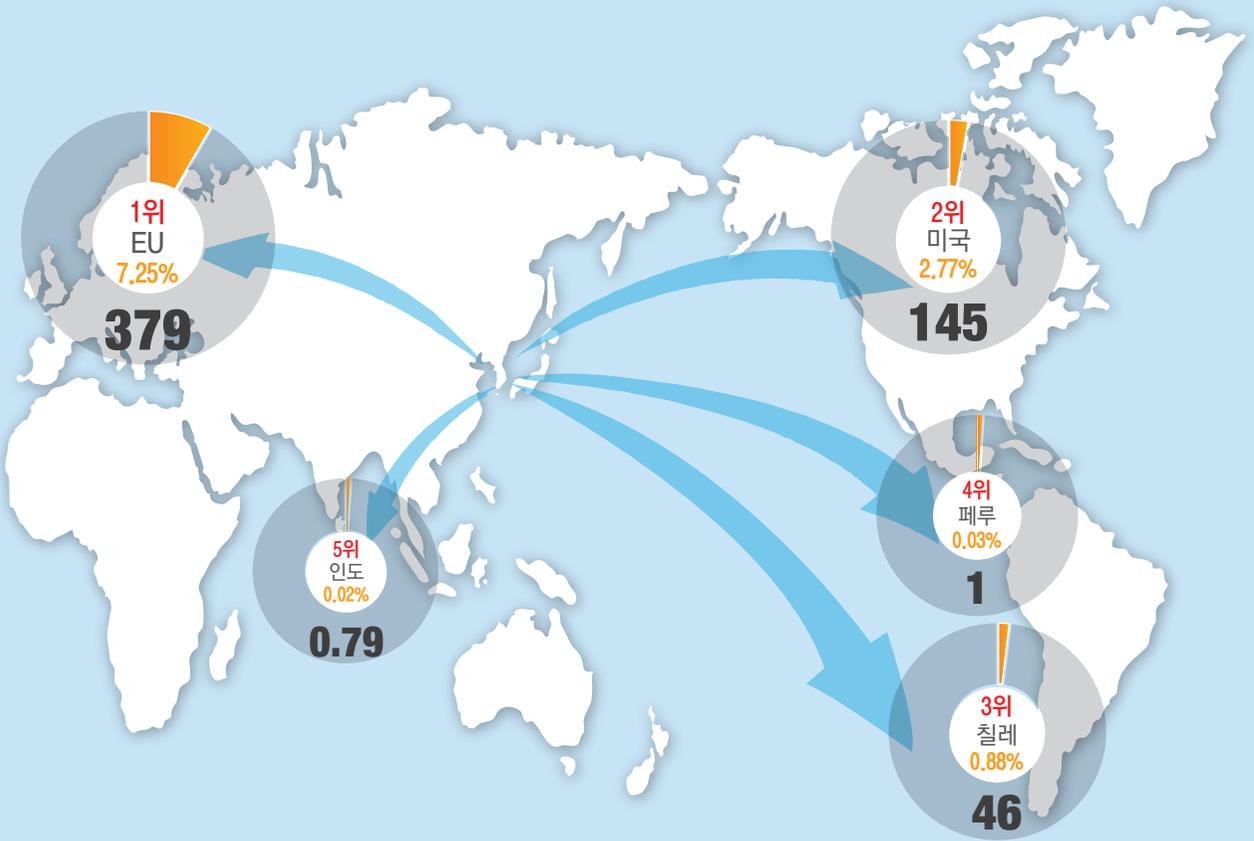
순위	국가	금액	FTA 특혜실적 대비비중	전체수출실적 대비 비중
1	미국	372	63.65	27.38
2	EU	200	34.2	14.71
3	칠레	11	1.86	0.80
4	EFTA	1	0.18	0.08
5	아세안	0.33	0.06	0.02
6	기타국가	0.25	0.04	0.02
총계		584	100	43.01

※ 주: MTI 3단위 기준  
 고무제품의 FTA 특혜실적 중 인도는 실적이 미미하여 생략함



## 2013년 1분기 FTA별 특혜수출 현황 : 합성 수지

FTA 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5.7억불(10.97%)	46.3억불(89.03%)	52억불(100%)



%: 전체 합성 수지 수출실적 대비 해당 국가로의 합성 수지 FTA 특혜실적

(단위 :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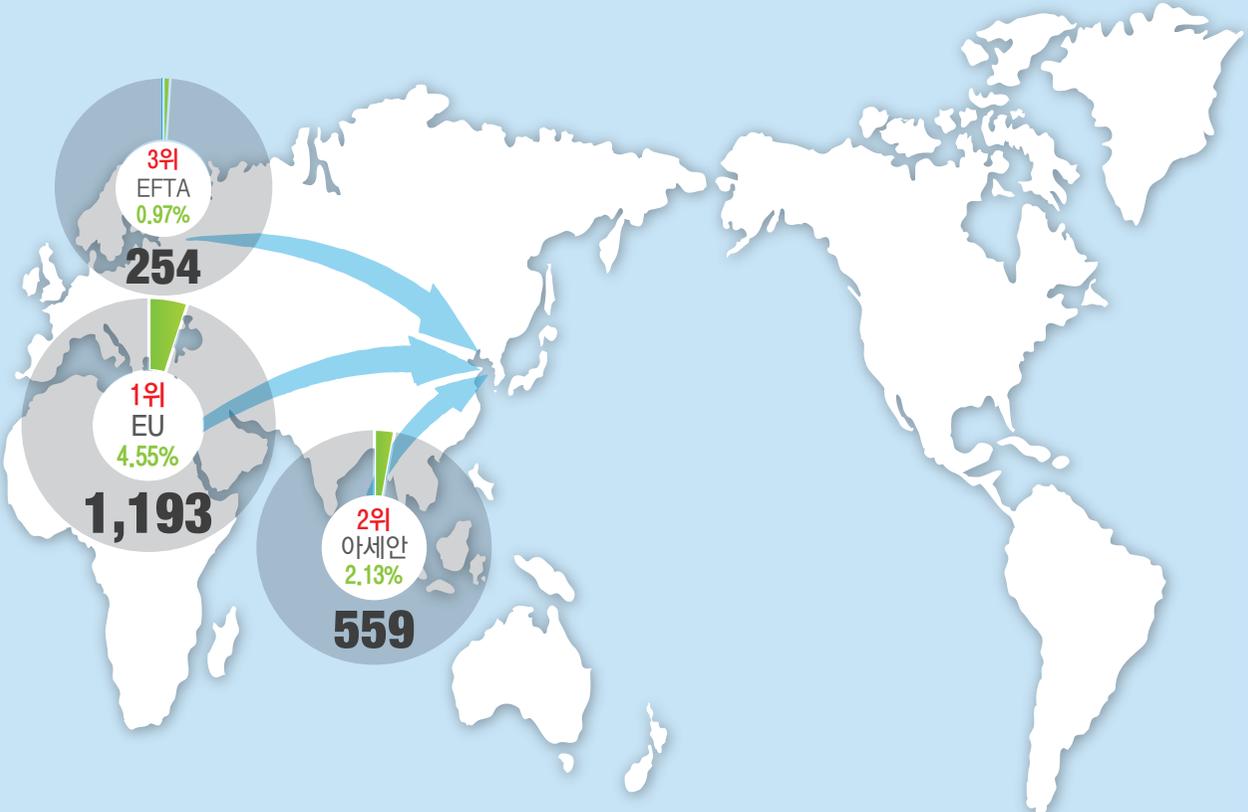
순위	국가	금액	FTA 특혜실적 대비비중	전체수출실적 대비 비중
1	EU	379	66.19	7.25
2	미국	145	25.26	2.77
3	칠레	46	8.00	0.88
4	페루	1	0.26	0.03
5	인도	0.79	0.14	0.02
6	기타국가	0.92	0.16	0.02
총 계		573	100	10.97



※ 주: MTI 3단위 기준

## 2013년 1분기 FTA별 특혜수입 현황 : 원유

FTA 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20억불(7.65%)	242억불(92.35%)	262억불(100%)



%: 전체 원유 수입실적 대비 해당 국가로의 원유 FTA 특혜실적  
백만달러

(단위 :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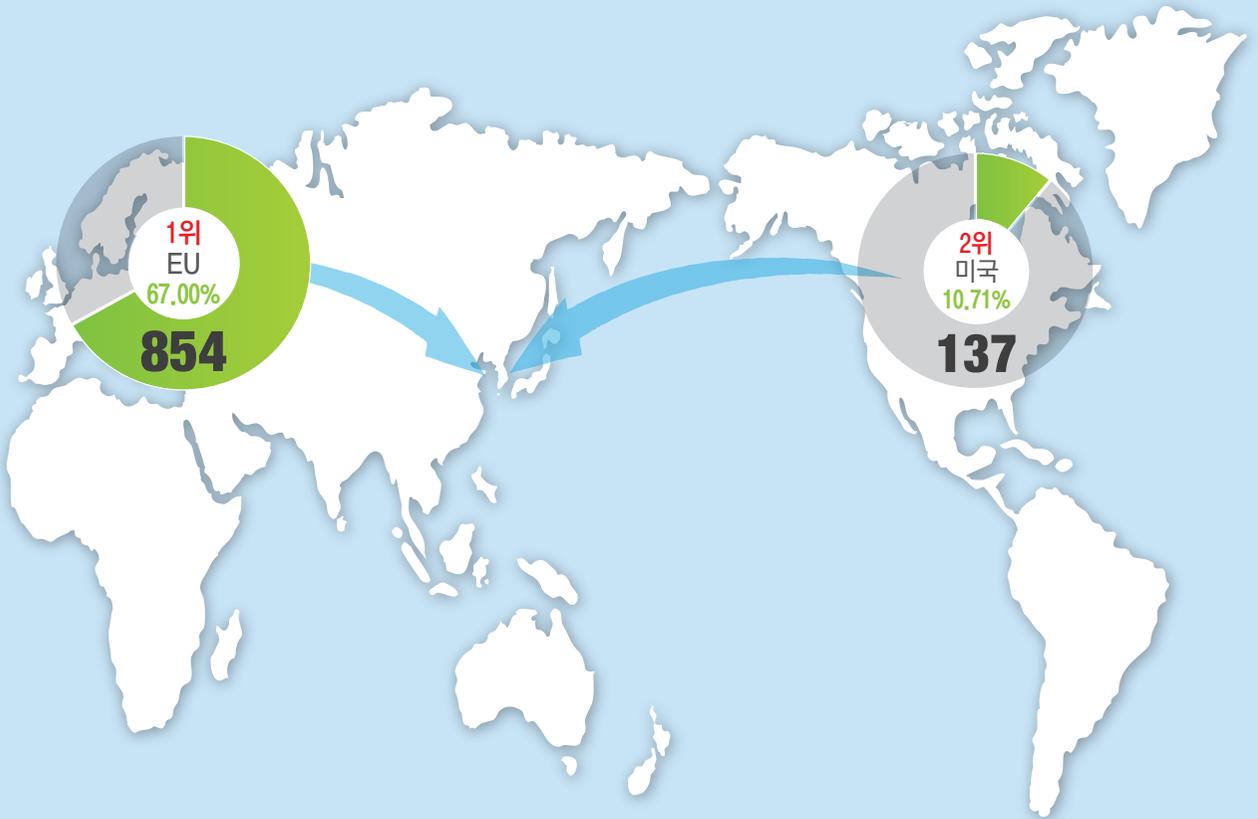
순위	국가	금액	FTA 특혜실적 대비비중	전체수입실적 대비 비중
1	EU	1,193	59.48	4.55
2	아세안	559	27.87	2.13
3	EFTA	254	12.65	0.97
총 계		2,006	100	7.65



※ 주: MTI 3단위 기준  
FTA체결국 중 FTA특혜실적에 나타나지 않는 국가는 실적이 없음

## 2013년 1분기 FTA별 특혜수입 현황 : 자동차

FTA 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9.9억불(77.71%)	2.8억불(22.29%)	12.7억불(100%)



%: 전체 자동차 수입실적 대비 해당 국가로의 자동차 FTA 특혜실적

(단위 :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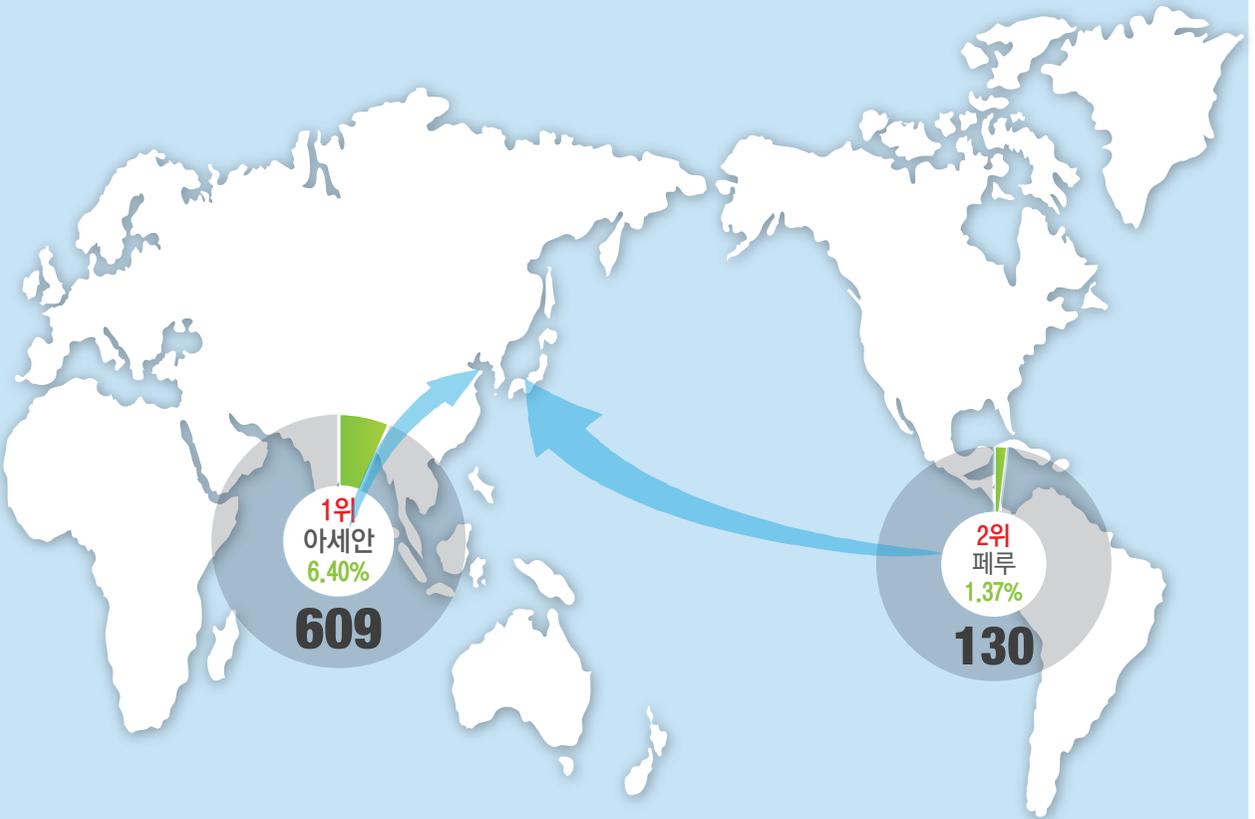
순위	국가	금액	FTA 특혜실적 대비비중	전체수입실적 대비 비중
1	EU	854	86.21	67.00
2	미국	137	13.78	10.71
총 계		991	100	77.71



※ 주: MTI 3단위 기준  
자동차의 FTA 특혜실적 중 EFTA, 아세안, 인도는 실적이 미미하여 생략함

## 2013년 1분기 FTA별 특혜수입 현황 : 천연가스

FTA 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7.4억불(7.77%)	77.6억불(92.23%)	95억불(100%)



**%** : 전체 천연가스 수입실적 대비 해당 국가로의 천연가스 FTA 특혜실적  
 백만달러

(단위 :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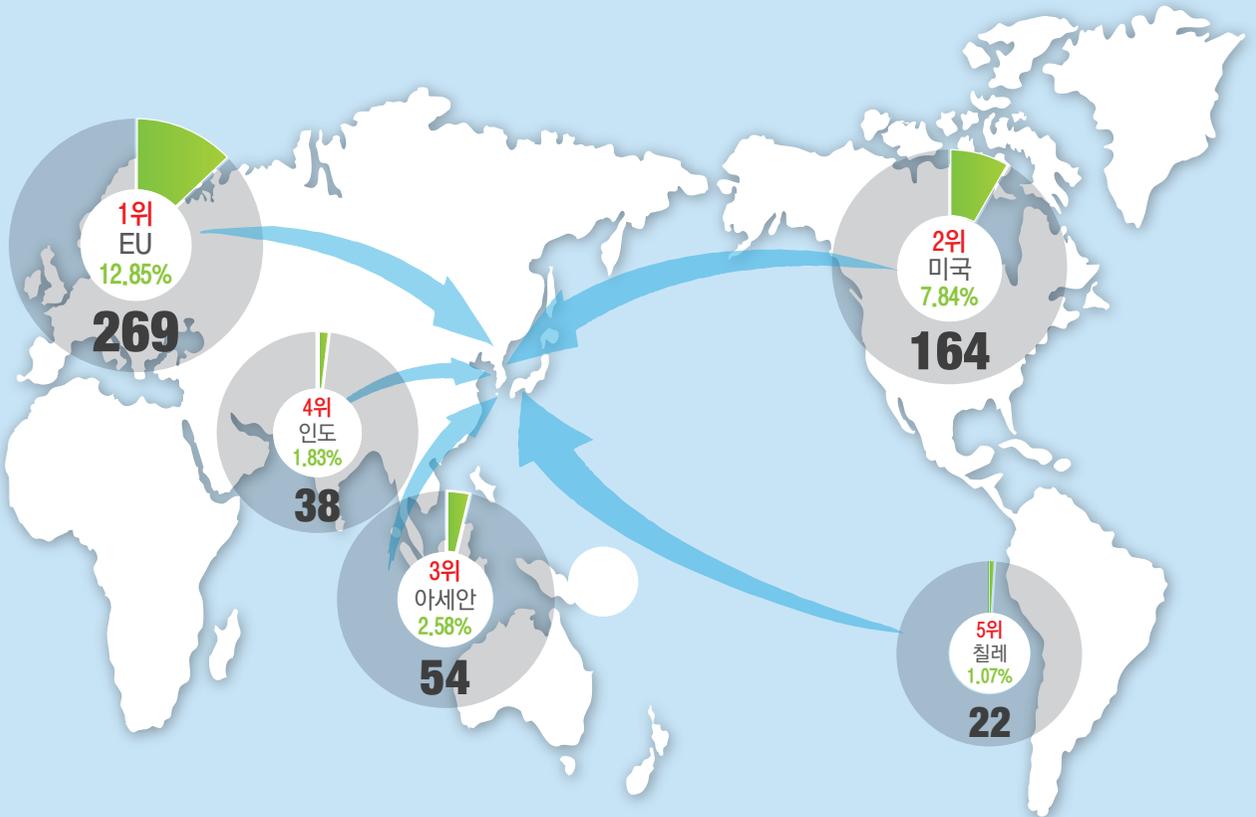
순위	국가	금액	FTA 특혜실적 대비비중	전체수입실적 대비 비중
1	아세안	609	82.38	6.40
2	페루	130	17.62	1.37
총 계		739	100	7.77



※ 주: MTI 3단위 기준  
 FTA체결국 중 FTA특혜실적에 나타나지 않는 국가는 실적이 없음

## 2013년 1분기 FTA별 특혜수입 현황 : 정밀화학

FTA 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5.6억불(27.19%)	15.1억불(72.81%)	20.9억불(100%)



%: 전체 정밀화학 수입 실적 대비 해당 국가로의 정밀화학 FTA 특혜실적  
백만달러

(단위 :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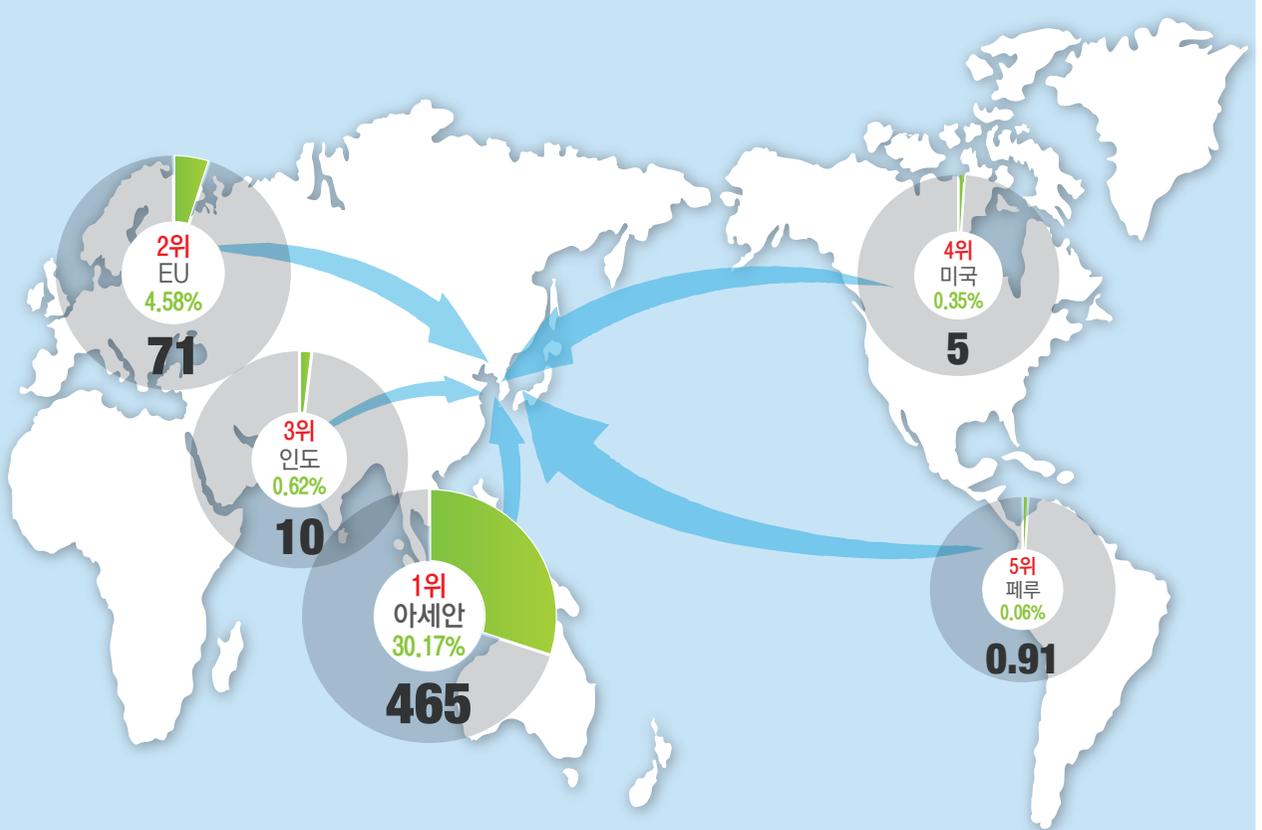
순위	국가	금액	FTA 특혜실적 대비비중	전체수입실적 대비 비중
1	EU	269	47.25	12.85
2	미국	164	28.83	7.84
3	아세안	54	9.49	2.58
4	인도	38	6.73	1.83
5	칠레	22	3.92	1.07
6	기타국가	21	3.18	1.03
총계		568	100	27.19



※ 주: MTI 3단위 기준

## 2013년 1분기 FTA별 특혜수입 현황 : 의류

FTA 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5.5억불(35.83%)	9.9억불(64.17%)	15.4억불(100%)



%: 전체 의류 수입 실적 대비 해당 국가로의 의류 FTA 특혜실적  
백만달러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	금액	FTA 특혜실적 대비비중	전체수입실적 대비 비중
1	아세안	465	84.20	30.17
2	EU	71	12.79	4.58
3	인도	10	1.72	0.62
4	미국	5	0.98	0.35
5	페루	0.91	0.17	0.06
6	기타국가	0.78	0.14	0.05
총계		552	100	35.83



※ 주: MTI 3단위 기준



# 부록

FTA 국가의 수출입 실적

FTA 특혜수출입 MTI 3단위 5대품목

터키의 수출입 실적 및 10대 교역품목

2012년 농림수산물 협정별 특혜수출입 동향



## 부록

### FTA 통계 1

#### | FTA 국가의 수출입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전년동기대비 증감	2012. 1분기	2013. 1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감
EU	수출	55,727	49,371	-11.41	12,804	11,613	-9.30
	수입	47,424	50,374	6.22	12,188	13,908	14.11
	교역액	103,151	99,745	-3.30	24,992	25,521	2.12
페루	수출	1,368	1,950	42.54	331	378	14.20
	수입	1,950	1,473	-24.46	427	506	18.50
	교역액	3,318	3,423	3.16	758	884	16.62
미국	수출	58,524	58,524	0.00	15,677	14,959	-4.58
	수입	43,337	43,337	0.00	11,818	10,441	-11.65
	교역액	101,861	101,861	0.00	27,495	25,400	-7.62
칠레	수출	2,381	2,469	3.70	576	600	4.17
	수입	4,858	4,676	-3.75	1,237	1,301	5.17
	교역액	7,239	7,145	-1.30	1,813	1,901	4.85
ASEAN <sup>48)</sup>	수출	71,801	79,145	10.23	18,441	20,563	11.51
	수입	53,121	51,977	-2.15	13,606	13,022	-4.29
	교역액	124,922	131,122	4.96	32,047	33,585	4.80
인도	수출	12,654	11,922	-5.78	3,027	2,939	-2.91
	수입	7,894	6,921	-12.33	1,686	1,706	1.19
	교역액	20,548	18,843	-8.30	4,713	4,645	-1.44
EFTA	수출	1,818	1,495	-17.77	300	361	20.33
	수입	5,177	7,713	48.99	1,646	1,770	7.53
	교역액	6,995	9,208	31.64	1,946	2,131	9.51
FTA체결국	수출	201,957	204,399	1.21	51,157	51,413	0.50
	수입	164,993	166,642	1.00	42,609	42,654	0.11
	교역액	366,950	371,041	1.11	93,766	94,067	0.32
비 FTA국	수출	353,257	343,471	-2.77	83,689	84,009	0.38
	수입	359,420	352,942	-1.80	91,062	87,094	-4.36
	교역액	712,679	696,415	-2.28	174,751	171,103	-2.09
총계	수출	555,214	547,870	-1.32	134,846	135,422	0.43
	수입	524,413	519,584	-0.92	133,671	129,748	-2.93
	교역액	1,079,629	1,067,456	-1.13	268,517	265,170	-1.25

48) 싱가포르를 아세안 10개국에 포함되므로 제외함

| FTA 체결국별 특혜수출입 분기별 실적(2012.1분기~2013.1분기) |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수출)	2012. 1분기	2012. 2분기	2012. 3분기	2012. 4분기	2012. 1분기	2013. 1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감
1 EU	7,308	7,926	6,810	7,078	7,308	7,397	1.22
2 페루	126	157	130	185	126	158	25.46
3 미국	928	3,920	4,052	4,036	928	4,269	360.22
4 칠레	437	435	411	529	437	458	4.84
5 ASEAN	54	71	68	72	54	71	30.78
6 인도	361	417	392	143	361	31	-91.36
7 EFTA	40	80	50	74	40	40	-0.18
총 계	9,254	13,006	11,913	12,117	9,254	12,424	34.26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수입)	2012. 1분기	2012. 2분기	2012. 3분기	2012. 4분기	2012. 1분기	2013. 1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감
1 EU	5,638	6,196	6,785	6,112	5,638	6,877	21.97
2 페루	39	44	36	41	39	173	347.30
3 미국	726	3,414	3,232	3,287	726	7,245	897.84
4 칠레	614	564	450	433	614	517	-15.85
5 ASEAN	6,425	5,926	5,359	5,342	6,425	3,761	-41.47
6 인도	268	261	251	287	268	373	39.23
7 EFTA	903	1,117	1,364	794	903	675	-25.24
총 계	14,613	17,522	17,477	16,296	14,613	19,621	34.27

## 부록

### | FTA 특혜수출입 MTI 3단위 5대품목(2012.1분기~2013.1분기) |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수출)	2012.1분기	2012.2분기	2012.3분기	2012.4분기	2012.1분기	2013.1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감
1 자동차 부품	1,190	1,994	2,187	1,940	1,190	2,141	79.95
2 자동차	1,885	1,728	1,536	2,034	1,885	1,948	3.32
3 석유제품	467	1,355	1,411	689	467	691	47.86
4 고무제품	354	709	608	578	354	584	65.19
5 합성수지	387	426	475	483	387	573	48.08
총 계	4,283	6,212	6,217	5,724	4,283	5,937	38.62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수입)	2012. 1분기	2012. 2분기	2012. 3분기	2012. 4분기	2012. 1분기	2013. 1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감
1 원유	2,286	2,860	2,994	1,903	2,286	2,006	-12.24
2 자동차	816	955	1,167	1,235	816	991	21.47
3 천연가스	2,618	2,026	1,570	1,428	2,618	739	-71.78
4 정밀화학 원료	404	606	633	594	404	581	43.62
5 의류	454	281	619	587	454	552	21.44
총 계	6,578	6,728	6,983	5,747	6,578	4,869	-25.98

## FTA 통계 2

### | 터키의 연도별 수출입 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	107,272 (25.3)	132,003 (23.1)	102,135 (-22.6)	113,930 (11.5)	134,954 (18.5)	152,560 (13.1)
수입	170,063 (21.8)	201,823 (18.7)	140,919 (-30.3)	185,493 (31.6)	240,833 (33.5)	236,536 (-1.8)
무역수지	-62,791 (21.1)	-69,820 (-11.2)	-38,784 (44.6)	-71,563 (-84.5)	-105,879 (-47.9)	-83,976 (20.7)

자료 : 터키 통계청

### | 터키의 10대 교역대상국 |

단위 : 백만달러

순위	10대 수출대상국			10대 수입대상국		
	국가명	수출액		국가명	수입액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1	독일	13,950	13,132	러시아	23,952	26,619
2	이라크	8,310	10,830	독일	22,985	21,399
3	이란	3,589	9,922	중국	21,693	21,295
4	영국	8,151	8,700	미국	16,034	14,131
5	UAE	3,706	8,177	이탈리아	13,449	13,344
6	러시아	5,992	6,683	이란	12,461	11,964
7	이탈리아	7,851	6,375	프랑스	9,229	8,589
8	프랑스	6,805	6,202	스페인	6,196	6,022
9	미국	4,584	5,614	인도	6,498	5,843
10	스페인	3,917	3,721	한국	6,298	5,660

자료: 터키 통계청

## 부록

### | 터키의 FTA 추진현황 |

2013. 6월 기준

구분	연번	국가	서명일	발효일	대상 분야	비고
발효	1	EFTA	91.12.10	92.4.1	상품	
	2	EC	95.3.6	96.1.1	상품	관세동맹
	3	이스라엘	96.3.14	97.5.1	상품	
	4	마케도니아	99.9.7	00.9.1	상품	
	5	크로아티아	02.3.13	03.7.1	상품	
	6	보스니아	02.7.3	03.7.1	상품	
	7	튀니지	04.11.25	05.7.1	상품	
	8	팔레스타인	04.7.20	05.6.1	상품	
	9	모로코	04.4.7	06.1.1	상품	
	10	시리아	04.12.23	07.1.1	상품	
	11	이집트	05.12.27	07.3.1	상품	
	12	알바니아	06.12.22	08.5.1	상품	
	13	조지아	07.11.21	08.11.1	상품	
	14	몬테네그로	08.11.26	10.3.1	상품	
	15	세르비아	09.6.1	10.9.1	상품	
	16	칠레	09.7.14	11.3.1	상품	
	17	요르단	09.12.1	11.3.1	상품	
	18	한국	12.8.1	13.5.1	상품	
서명	1	레바논	10.11.24	미발효	상품	
	2	모리셔스	11.9.9	미발효	상품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3), 한·터키 FTA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터키의 10대 교역품목(2012년도)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10대 수출품목				10대 수입품목			
	품명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	품명	수입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1	보석 및 귀금속류	3,739	16,327	336.7	광물성 연료	54,113	60,113	11.1
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15,805	15,150	-4.1	기계 및 기계부품	27,107	26,314	-2.9
3	기계 및 기계부품	11,563	12,014	3.9	철강	20,424	19,640	-3.8
4	철강	11,234	11,341	1.0	전자기계장치	16,836	16,279	-3.3
5	전자기계장치	8,888	9,380	5.7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17,184	14,514	-15.5
6	의류(니트)	8,396	8,427	0.5	플라스틱제품	12,578	12,505	-0.6
7	광물성 연료	6,536	7,707	17.9	보석 및 귀금속류	7,022	8,529	21.5
8	철강제품	5,761	6,103	6.2	유기화학제품	5,504	5,064	-8.0
9	의류(니트 제외)	5,129	5,435	6.1	광학정밀기기	4,116	4,055	-1.5
10	플라스틱제품	4,581	5,015	9.5	의약품	4,697	3,995	-14.9

자료 : 터키 통계청

## 부록

### | 對한 10대 터키 교역품목(2012년도)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10대 수출품목				10대 수입품목			
	품 명	수 출 액		전년동기대비 증감	품 명	수 입 액		전년동기대비 증감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1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59	999	16.3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 물질, 광물성 왁스	296	308	4.1
2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990	724	-26.9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175	86	-50.9
3	플라스틱 및 그 제품	601	565	-6.0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것은 제외)	21	28	33.3
4	철강	371	305	-17.8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32	22	-31.3
5	선박과 수상구조물	386	295	-23.6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18	19	5.6
6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361	277	-23.3	가죽제품, 동물거트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기타 유사제품	17	19	11.8
7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46	255	3.7	무기화학품, 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동위원소의 유기 .무기화합물	12	15	25.0
8	고무와 그 제품	215	169	-21.4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29	12	-58.6
9	철강의 제품	50	143	186.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	12	50.0
10	인조장섬유	145	132	-9.0	철강의 제품	6	10	66.7

주 : HS 2단위 기준 품목 추출

### FTA 통계 3

#### | 2012년 농림수산물 협정별 특혜수출 동향 |

단위 : 천달러, %

협정	총 수출금액	FTA 대상 수출금액	FTA 비중
ASEAN	933,949	554,939	59
미국	588,331	487,359	83
EU	197,296	182,599	93
싱가포르	85,088		0
EFTA	13,995	3,518	25
인도	8,544	7,846	92
칠레	5,003	4,702	94
페루	603	306	51
총 계	1,832,809	1,241,269	68

#### | 2012년 협정별 주요 특혜수출품목(MTI 6단위 기준) |

##### 칠레

단위 : 천달러

품목(수출)	총 수출금액	FTA 대상수출금액
1 면류	1,013	1,013
2 기타음료	452	452
3 빵	139	139
4 기타해조류	237	237
5 검	57	57
6 기타채소	51	51
7 녹차	46	46
8 기타수산물가공품	45	45
9 인삼류	130	130
10 소주	47	47
총 계	2,216	2,216

## 부록

### ASEAN

단위 : 천달러

	품명(수출)	총수출금액	FTA 대상수출금액
1	기타유지가공품	9,061	8,276
2	제조담배	96,162	2,658
3	면류	42,710	33,851
4	사탕	2,852	1,962
5	로얄제리	9,361	8,187
6	건축용목제품	1,864	1,214
7	팽이버섯	4,632	3,459
8	기타음료	4,425	4,173
9	인삼주	46	27
10	느타리버섯	475	69
	총 계	171,587	63,877

### EFTA

단위 : 천달러

	품목(수출)	총수출금액	FTA 대상수출금액
1	면류	2,875	2,875
2	단백질류	315	234
3	기타소스류	104	104
4	사탕	23	23
5	느타리버섯	19	19
6	곡류가공품	9	9
7	커피조제품	7	7
8	기타목재류	6	6
9	기타음료	88	3
10	기타해조류	14	14
	총 계	3,461	3,295

## 인도

단위 : 천달러

	품목(수출)	총수출금액	FTA 대상수출금액
1	종자류	2,213	2,213
2	커피조제품	1,036	1,035
3	기타수산물가공품	750	750
4	면류	535	535
5	검	436	436
6	기타임산물부산물	338	338
7	커피	277	277
8	섬유판	269	269
9	과일주스	247	247
10	기타소스류	245	245
	총 계	6,346	6,345

## 페루

단위 : 천달러

	품목(수출)	총수출금액	FTA 대상수출금액
1	곡류가공품	54	54
2	기타음료	41	41
3	제조담배	27	27
4	효모류	3	3
5	맥주	1	1
6	소주	35	35
7	목제식탁용품	3	3
8	빵	10	-
9	초코렛	-	-
10	기타목재생활용품	0.3	0.3
	총 계	175	164

## 부록

### EU

단위 : 천달러

	품목(수출)	총수출금액	FTA 대상수출금액
1	어육	17,462	17,462
2	참치	35,278	35,278
3	면류	20,943	20,943
4	기타수산가공품	7,764	7,764
5	기타음료	9,648	9,648
6	느타리버섯	5,532	5,532
7	커피조제품	2,700	2,700
8	기타해조류	4,610	4,521
9	로얄제리	8,630	8,630
10	기타동물성유지	1,300	1,300
	총 계	113,868	113,779

### 미국(2012.2분기~2013.1분기)<sup>49)</sup>

단위 : 천달러

	품명(수출)	총수출금액	FTA 대상수출금액
1	기타해조류	58,293	56,317
2	면류	59,087	59,087
3	기타음료	44,040	44,040
4	로얄제리	16,718	16,718
5	단백질류	11,540	11,540
6	비스킷	19,398	19,398
7	배	23,298	23,298
8	기타수산가공품	25,997	17,349
9	기타농산가공품	20,523	20,523
10	기타소스류	17,143	17,143
	총 계	296,038	285,414

49) 미국의 경우 FTA 발효일이 2012년 3월 15일이므로 2분기부터의 실적을 계상함

| 2012년 농림수산물 주요수입 품목과 FTA 비중 |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	對 세계 수입	對 FTA 수입	FTA 점유율
1	사료	3,499,303	1,720,894	49
2	박류	1,598,743	644,663	40
3	쇠고기	1,410,078	522,518	37
4	천연고무	1,372,738	1,371,126	100
5	돼지고기	1,206,562	1,035,914	86
6	원당	986,433	281,401	29
7	밀	866,640	441,172	51
8	기타어류	799,970	275,533	34
9	기타식물성유지	759,986	702,243	92
10	대두	746,697	310,477	42
11	옥수수	724,021	194,184	27
12	면	688,858	178,770	26
13	원목	655,476	141,445	22
14	합판	592,346	393,222	66
15	로얄제리	497,374	403,349	81
16	기타수산물가공품	491,141	330,885	67
17	커피	477,206	213,204	45
18	제재목	472,967	194,225	41
19	기타농산물가공품	458,404	244,393	53
20	대두유	424,650	88,676	21
총 계		18,729,593	9,688,294	51.73

| 2012년 농림수산물 협정별 특혜수입 동향 |

단위 : 천달러, %

협정	총 수입금액	FTA 대상 수입금액	FTA 비중
미국	7,878,201	5,085,469	65
아세안	5,469,523	2,881,982	53
EU	2,648,543	1,972,333	74
칠레	563,069	522,247	93
인도	673,852	329,548	49
EFTA	190,004	145,042	76
페루	131,549	124,081	94
싱가포르	96,239	86,569	90
총 계	17,650,981	11,147,271	63

## 부록

### 칠레

단위 : 천달러

	품명(수입)	총수입금액	FTA 대상수입금액
1	포도	118,129	118,129
2	돼지고기	125,908	92,165
3	제재목	73,767	73,767
4	기타수산물가공품	40,843	40,842
5	기타어류	42,208	42,208
6	포도주	30,410	30,396
7	과일주스	25,662	25,661
8	오징어	22,520	21,715
9	기타과실	16,028	16,028
10	호도	15,093	15,092
	총 계	510,569	476,003

### ASEAN

단위 : 천달러

	품명(수입)	총수입금액	FTA 대상수입금액
1	기타식물성유지	465,187	437,670
2	박류	298,832	298,472
3	어육	142,653	142,653
4	기타목재류	234,294	146,493
5	기타수산물가공품	159,843	139,493
6	당밀	105,830	105,830
7	문어	90,867	90,866
8	커피	84,114	83,910
9	대두유	80,610	78,361
10	제조담배	82,248	82,235
	총 계	1,744,479	1,605,982

EFTA

단위 : 천달러

	품명(수입)	총수입금액	FTA 대상수입금액
1	기타어류	105,201	63,372
2	커피	17,564	17,563
3	어육	13,652	13,652
4	식물성액즙	10,990	10,990
5	기타수산물가공품	6,941	6,941
6	초코렛	6,192	5,586
7	기타농산물가공품	3,952	3,952
8	로얄제리	3,343	3,342
9	사탕	1,740	1,740
10	기타채소	1,191	1,191
	총 계	170,767	128,329

인도

단위 : 천달러

	품명(수입)	총수입금액	FTA 대상수입금액
1	박류	239,302	116,472
2	어육	8,139	8,139
3	대두	7,679	7,679
4	기타식물성재료	10,891	10,890
5	기타수산물가공품	6,191	6,191
6	기타농산물가공품	3,476	3,472
7	커피	2,531	2,407
8	기타동물뼈	1,886	1,886
9	식물성액즙	22,274	22,271
10	잎담배	31,440	31,440
	총 계	333,810	210,848

## 부록

### 페루

단위 : 천달러

	품명(수입)	총수입금액	FTA 대상수입금액
1	기타수산물가공품	56,213	51,449
2	커피	39,090	39,089
3	오징어	14,680	14,498
4	포도	5,084	5,084
5	어육	4,911	4,911
6	바나나	2,909	2,909
7	수산물부산물	1,795	1,795
8	아스파라거스	959	959
9	기타축산물부산물	401	401
10	기타식물성유지	385	385
	총 계	126,428	121,481

### EU

단위 : 천달러

	품명(수입)	총수입금액	FTA 대상수입금액
1	돼지고기	519,600	305,811
2	위스키	200,263	200,258
3	포도주	84,450	84,369
4	기타낙농품	94,608	83,519
5	치즈	70,920	67,396
6	사료	107,434	68,912
7	초코렛	74,292	67,440
8	단백질류	63,828	63,826
9	제재목	46,582	46,582
10	기타수산물가공품	46,905	46,904
	총 계	1,308,883	1,035,017

미국 (2012.2분기~2013.1분기)

단위 : 천달러

	품명(수입)	총수입금액	FTA대상수입금액
1	쇠고기	528,003	528,003
2	밀	439,293	433,976
3	돼지고기	370,938	365,742
4	사료	1,121,269	240,492
5	박류	247,344	164,128
6	로얄제리	335,614	228,249
7	오렌지	174,837	174,837
8	아몬드	141,657	141,656
9	치즈	149,376	146,224
10	호도	108,672	108,670
	총 계	3,617,003	2,531,976

FTA 주요 수입 품목과 협정보포 (2012년)

단위 : 천달러

순위	품목	對 FTA국 수입금액	주요 활용 협정
1	사료	2,000	미국
2	천연고무	1,372	아세안
3	돼지고기	1,144	EU, 미국, 칠레
4	박류	847	아세안, 미국, 인도
5	쇠고기	676	미국
6	기타식물성유지	599	아세안
7	밀	561	미국
8	대두	517	미국
9	로얄제리	487	미국
10	기타수산물가공품	328	아세안, 페루, EU, 칠레
11	합판	321	아세안
12	오렌지	310	미국, 칠레
13	기타목재류	290	아세안, EU
14	기타어류	284	EFTA, 미국, 칠레
15	원당	281	아세안
16	치즈	258	미국, EU
17	기타농산물가공품	255	아세안, 미국, 인도
18	어육	253	아세안, 미국
19	바나나	248	아세안
20	면	223	미국

## 부록

### 협정별 활용기업수 및 신규수출입업체

| 협정별 활용기업수(수출) |

단위 : 개수

협정별	기업규모별	2012. 1분기	2012. 2분기	2012. 3분기	2012. 4분기	2012년	2012. 1분기	2013. 1분기
칠레	대기업	6	7	8	10	12	6	10 (4)
	중소기업	67	87	81	72	165	67	93 (26)
ASEAN	대기업	97	98	97	102	121	97	-
	중소기업	1,979	2,164	2,315	2,388	3,607	1,979	-
EFTA	대기업	26	24	30	27	43	26	28 (2)
	중소기업	363	368	371	343	770	363	395 (32)
인도	대기업	40	43	44	50	57	40	-
	중소기업	241	298	356	351	564	241	-
페루	대기업	34	32	37	36	45	34	39 (5)
	중소기업	241	251	256	264	516	241	254 (13)
EU	대기업	131	137	130	138	177	131	149 (18)
	중소기업	4,243	4,571	4,676	4,781	7,337	4,243	4,988 (745)
미국	대기업	99	138	135	133	175	99	141 (42)
	중소기업	2,141	4,268	4,414	4,432	7,041	2,141	4,533 (2,392)

주 : ( )전년대비 증감한 기업수

| 협정별 활용기업수(수입) |

단위 : 개수

협정별	기업규모별	2012. 1분기	2012. 2분기	2012. 3분기	2012. 4분기	2012년	2012. 1분기	2013. 1분기
칠레	대기업	26	29	27	30	39	26	31 (5)
	중소기업	377	422	432	391	675	377	423 (46)
ASEAN	대기업	89	95	95	98	123	89	96 (7)
	중소기업	5,255	5,478	5,503	5,664	8,678	5,255	5,678 (423)
EFTA	대기업	65	65	65	63	100	65	60 (-5)
	중소기업	1,591	1,628	1,622	1,709	2,901	1,591	1,660 (69)
인도	대기업	41	36	41	34	58	41	42 (1)
	중소기업	1,121	1,251	1,274	1,234	2,070	1,121	1,373 (252)
페루	대기업	3	5	5	5	6	3	4 (1)
	중소기업	98	105	119	121	206	98	142 (44)
EU	대기업	230	250	254	269	344	230	247 (17)
	중소기업	12,437	13,099	13,943	14,265	26,593	12,437	14,087 (1,650)
미국	대기업	100	184	193	202	297	100	202 (102)
	중소기업	3,923	10,056	10,222	10,341	18,812	3,923	10,996 (7,073)

주 : ( )전년대비 증감한 기업수

## 부록

### | 신규수출업체 |

단위 : 개수

협정별	기업규모별	2011년	2012년	2012년 신규수출기업	2012. 1분기	2013. 1분기	2013년 1분기 신규수출기업
칠레	대기업	78	80	19	52	60	16
	중소기업	1,902	1,911	691	1,007	1,027	477
ASEAN	대기업	291	319	59	244	184	52
	중소기업	29,097	30,966	10,759	18,096	19,530	7,430
EFTA	대기업	79	80	19	49	45	16
	중소기업	2,230	2,243	883	1,128	1,166	575
인도	대기업	158	183	44	127	141	35
	중소기업	6,988	7,133	2,516	4,066	4,177	1,599
페루	대기업	60	68	18	52	55	13
	중소기업	1,227	1,292	489	629	644	311
EU	대기업	267	279	59	207	216	44
	중소기업	17,084	17,249	5,348	10,513	10,757	3,659
미국	대기업	273	282	49	213	170	39
	중소기업	18,370	18,842	6,375	11,240	11,433	4,025

대상 : 우리나라 체결 FTA 국으로의 수출업체

2012년 신규수출업체는 2011년과 비교하여 2012년 신규로 수출한 기업을 신규수출업체로 정의함.

2013.1분기 신규수출업체 또한 2012.1분기와 비교하여 2013년.1분기 신규로 진출한 기업을 신규수출업체로 정의함.

| 신규수입업체 |

단위 : 개수

협정별	기업규모별	2011년	2012년	2012년 신규수입기업	2012. 1분기	2013. 1분기	2013년 1분기 신규수입기업
칠레	대기업	59	60	17	38	42	12
	중소기업	1,011	1,080	485	559	579	248
ASEAN	대기업	355	426	94	295	273	68
	중소기업	30,804	34,485	12,453	19,903	17,290	7,481
EFTA	대기업	171	179	49	111	119	44
	중소기업	5,840	6,003	2,443	3,030	3,163	1,443
인도	대기업	165	169	46	109	119	38
	중소기업	6,794	7,252	3,274	3,579	3,943	1,884
페루	대기업	24	29	11	17	18	7
	중소기업	511	589	362	235	265	161
EU	대기업	479	504	95	358	377	80
	중소기업	39,862	41,470	13,764	24,046	24,664	9,085
미국	대기업	461	495	108	359	343	63
	중소기업	40,286	39,796	13,450	23,082	22,514	8,553

대상 : 우리나라 체결FTA 국으로의 수입업체

2012년 신규수입업체는 2011년과 비교하여 2012년 신규로 수입한 기업을 신규수입업체로 정의함.

2013.1분기 신규수입업체 또한 2012.1분기와 비교하여 2013년.1분기 신규로 진출한 기업을 신규수입업체로 정의함.

## 부록

### | 협정별 FTA 수출입 활용률 |

단위 : %

협정별 FTA 수출입 활용률 <sup>50)</sup>						
구분(발효)	수출			수입		
기준	2011년	2012년	2013. 1분기	2011년	2012년	2013. 1분기
칠레('04)	-	75.2	78.4	95.8	97.9	99.1
EFTA('06.9)	-	79.8	79.9	55.7	61.9	45.7
ASEAN('07)	33.1	37.7	41.5	73.8	73.8	55.1
인도('10.1)	35.8	36.2	45.2	53.6	52.7	59.3
EU('11.7)	65.7	81.4	83.6	47.1	66.8	67.9
페루('11.8)	61.3	78.0	90.4	52.6	92.0	67.7
미국('12.3)	-	68.9	73.8	-	61.0	63.7

50) 수출활용률 =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액 / FTA 특혜관세 대상 수출액\*100

수입활용률 = 특혜관세 적용 수입액 / FTA 특혜관세 대상 수입액\*100 (\* 전체 수입 품목 중 양허제외, MFN세율이 무관세인 품목 등을 제외)

## FTA 용어집

### 1. 계절관세 (Seasonal Duties)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세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관세보다 높거나 또는 낮게 부과하는 관세이다. 예를 들어, 농산물의 수확기에는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비수확기에는 수입관세를 면제하여 가격의 상승을 막게 된다.

ex) 한·칠레 FTA에서 포도는 11월~4월까지만 협정세율 적용

### 2. 원산지결정기준

물품의 원산지 결정을 위하여 적용되는 판단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원산지에 따라 관세를 달리 적용하기 위한 것을 특혜규정이라 하고, 관세 이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비특혜규정이라 한다. 대표적인 특혜규정은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들 수 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대외무역법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비특혜규정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본문에서 말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변형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 3. 조합기준

원산지 결정기준 중 품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결합한 것을 조합기준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원산지 결정기준은 하나만 적용되는 단일기준,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는 선택기준이 있다.

### 4. 완전생산기준

어떤 물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협정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으로서,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획득된 상품"은 당해 국가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농수산물, 광산물에 주로 적용된다.

### 5. 실질변경기준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FTA에서는 실질적 변경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세번변경, 부가가치, 특정가공공정(이하 주요 공정)기준으로 구분된다.<sup>51)</sup>

### 6.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와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보통 HS 4단위(CTH) 또는 6단위(CTSH) 기준이 사용되지만, 농수축산업 생산물 등에는 2단위(CC)도 사용된다.

- ① HS 2단위 변경 기준(CC, change of chapter): 원료의 HS부호와 완제품의 HS부호를 비교하여 앞의 2단위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 ② HS 4단위 변경 기준(CTH, change of tariff heading): 원료의 HS부호와 완제품의 HS부호를 비교하여 앞의 4단위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 열연강판(HS 7208)으로 냉연강판(HS 7209)을 만드는 경우 CTH가 적용되면 원산지가 인정되나 CC가 적용되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불가
- ③ HS 6단위 변경 기준(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원료의 HS부호와 완제품의 HS부호를 비교하여 앞의 6단위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 NAFTA에서는 RVC 50% 또는 60%를 사용

### 7.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Regional Value Contents)

물품의 실질변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완제품의 전체 가치 중에서 협정당사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이상이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계산방법에는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이 주로 사용된다.

### 8. MC법(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

MC법은 역외산재료의 최대 함량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여타의 제조경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원리는 RVC의 공제법과 유사하다. 다만 상품가격의 경우 RVC에서는 FOB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MC법에서는 공장도가격(EXW)을 사용한다.

한·EU FTA, 한·EFTA FTA에서는 부가가치기준으로 MC법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이 그간 맺어온 FTA의 역사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1) 한국관세무역개발원(FTA 세율/원산지 종합정보)

## 부록

### 9. 가공공정기준

원산지 결정기준 중 한 종류로서 역내에서 협정이 정한 생산공정을 거쳐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세번 변경이나 부가가치기준에 비하여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는 좁은 편이며, 어류·식물성 생산품·석유제품·화학제품·플라스틱·섬유제품 등에 채택하고 있다.

### 10. FOB 가격(Free On Board Price)

원산지 규정의 역내 부가가치기준 계산 공식의 한 요소로서 상품이 지정된 수출항에서 운반기로 선적될 때, 상품의 가격과 운반기로 상품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 상품에 대하여 수출업자에게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 11. 원산지 검증(origin verification)

원산지 검증이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합법적으로, 그리고 사실과 일치하게 발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원산지 검증방식은 직접검증, 간접검증, 혼합검증 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 12. HS Code(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WCO(세계관세기구)의 주관하에 체결된 상품분류에 관한 국제 협약으로, HS Code란 국제협약에 의해 국제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상품분류체계이다. HS Code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상품분류 체계로서 WTO등의 국제협상에서도 수입개방여부, 관세양허 등 협상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등 국제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다. HS 분류는 통상 6단위(Sub-heading)까지를 공통으로 하고 있으며, 6단위 이하의 세분류는 가입국들이 자국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10단위까지 세분한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를 운용하고 있다.<sup>52)</sup>

### 13.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코드

수출입 품목분류 체계 중 하나로 통계편의를 위해 HS 코드분류를 산업별로 재분류 한 것을 의미한다. (과거 상공자원부 영문(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의 약자)

### 14. MFN 세율

해당 협정체약국의 회원국에 무차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관세율을 말한다.

### 15.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 16. TPP(Trans-Pacific Partnership or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추진 중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15년까지 TPP참여국내에 ('13년 현재 총 12개국(일본 포함))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협정에는 관세철폐 이외에도 농업, 노동, 환경보호, 정부구매, 투자,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 무역, 기술무역 장벽, 원산지 표준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주요사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예외품목을 두지 않고 있다.<sup>53)</sup>

### 17.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경제동반자 협정)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목표로 하는 국가간 경제협력 방안이다. EPA는 관세 철폐·인하 외에 투자와 서비스, 지식재산, 인적자원 이동의 자유까지 포괄한다. 협정 체결국들은 느슨한 형태로 경제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52) 국제원산지정보원(2009), 손에 잡히는 FTA 실무

53) 한국섬유산업연합회(201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개요 및 영향

발행일 : 2013년 7월

발행처 :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2-1304호

TEL. 042) 481-3282 / FAX. 042) 481-7753

<http://fta.customs.go.kr>

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031) 6000-701-3 / FAX. 031) 6000-704

<http://www.origin.or.kr>

편집 :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실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인쇄 : 킨코스코리아

발간등록번호 : 11-1220000-000336-14



# FTA 무역 리포트

July 2013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